

金融實名制와 國民經濟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지난 10여년간 전국민적 관심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금융실명제는 1982년 실시발표 이후 두차례의 실시유보를 거친 뒤 지난 8월 12일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 실시되었다. 금융실명제의 기본목적이 올바른 금융관행의 정착과 조세형평의 확보를 통한 사회·경제정의의 구현이라 할 때,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과연 이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그동안의 논란의 주요대상이었다. 또한 어떤 형태로 금융실명제를 도입·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이제 어떤 형태이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는 더이상 낭비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실명제가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 현대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 인식할 때 이의 성공적인 정착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적 과제라 하겠다. 금융실명제의 성공여부는 정책당사자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 모두가 실명제시대에 부응하는 의식과 행동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이해일 것이다. 본 책자는 우리 국민이 금융실명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금융실명제의 논의가 처음 제기된 1982년부터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시행되고 그 후 9월 24일 후속조치가 발표된 시점까지의 금융실명제 실시의 효과 그리고 보완대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책자에 담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본 책자를 발간한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와 금융문제를 함께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융개혁과 조세개혁을 접목시켜 이

루어진 금융실명제를 논의하는 데 다소 유리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원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전인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조세와 금융전문 연구위원, 초청교수 그리고 파견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금융실명제의 도입과제와 실시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실명제에 관한 풍부한 자료와 지식을 쌓았다. 그 연구진은 崔洸 당시 연구부장(연구총괄), 安鍾範박사(연구간사), 金明淑박사, 安鍾吉박사, 崔興植박사, 연세대 尹建永교수, 서울시립대 崔明根교수, 재무부 金振杓국장, 吳成益과장으로 구성되었다. 본 책자는 그 당시의 연구결과와 정부간행물, 그리고 기존의 금융실명제 관련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安鍾範 박사와 申淇詵 연구원이 I장에서 IV장까지를 작성하였으며 崔興植 박사가 V장, 그리고 安鍾範 박사와 孫光洛 박사가 VI장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부록 1> 외국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에서 작성한 자료를 金明淑 박사가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책자가 출간되기까지 뜻있는 조언을 통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본 연구원의 여러 연구위원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본 연구원 금융실명제연구팀의 연구과정을 통해 많은 지도를 해준 鄭永儀 前任院長께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또한 저자들은 원고정리 등을 통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申壽美, 李賢暎 두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많은 독자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 금융실명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고 아울러 보다 깊이있는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책자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1993년 10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朴宗淇

目 次

I. 金融實名制란 무엇인가?	11
1. 金融實名制의 概念	11
2. 金融實名制의 目的	12
가. 金融去來秩序의 正常化	12
나. 租稅衡平提高를 위한 與件造成	12
다.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	13
3. 金融實名制의 推進經緯	14
가. 金融實名去來制에 관한 法律制定(7·3조치) 및 實施留保	14
나. 金融實名制 實施(1993년 8월 12일 20시)	22
II. 金融實名去來에 關한 緊急命令의 背景과 主要內容	23
1. 緊急命令의 背景	23
2. 主要內容	24
가. 金融機關과의 去來時 ‘實地名義(實名)’ 使用義務	24
나. 既存 非實名 金融資産에 대한 措置	25
다. 金融去來情報의 秘密保障 強化	27
라. 既存 實名法과의 比較	28
3. 몇가지 爭點과 政府의 立場	31
가. 金融實名制 實施時期의 問題	31
나. 私有財産權 侵害의 問題	32
다. 借名去來의 實名化 問題	34

III. 金融實名制 實施關聯 副作用對策 및 補完措置	37
1. 副作用對策	37
가. 不動産 등 實物部門	37
나. 金融市場의 安定化 對策	39
다. 證券市場의 安定化 對策	40
라. 中小企業 支援對策	41
마. 資金의 海外流出 防止對策	44
2. 金融實名制 實施 1次 補完措置(1993.8.31)	45
가. 金融實名制實施初期의 經濟狀況	46
나. 對策推進方向	46
다. 稅務行政 運用方向	47
라. 金融關聯 補完對策	51
3. 金融實名制 實施 2次 補完措置(1993.9.24)	53
가. 發表當時 經濟狀況	54
나. 後續措置의 背景과 內容	55
IV.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經濟狀況과 向後展望	59
1. 經濟狀況	59
가. 市場金利	59
나. 通貨動向	60
다. 證券市場	61
라. 外換市場	62
마. 金融圈別 受信動向	62
마. 私債市場	63
사. 不動産 및 實物市場	63
2.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	64
가. 實名確認 및 轉換現況	64
나.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 實績에 대한 評價	67

3. 向後 展望	68
가. 實物經濟에 미치는 影響	68
나. 企業經營環境의 變化	69
다. 金融慣行의 變化	71
V.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向後 金融政策 方向	73
1. 問題의 提起	73
2. 通貨信用政策의 方向	74
3. 金利自由化의 推進	77
4. 中小企業金融의 活性化	78
5. 資本市場의 活性化	79
VI. 金融實名制實施에 따른 向後 租稅政策의 方向	81
1. 問題의 提起	81
2. 課稅資料 陽性化에 따른 稅制改編 方案	83
가.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84
나. 法人稅制의 改編方向	87
다. 相續·贈與稅制의 改編方向	89
라. 附加價值稅制의 改編方向	93
3. 稅務行政上의 補完對策	93
4. 利子·配當所得 綜合課稅 方案	96
가. 利子·配當所得 課稅 現況	96
나. 利子·配當所得 綜合課稅를 위한 主要 檢討課題	98
VII. 金融實名制와 國民經濟	101
參考文獻	105

〈부록〉

〈附錄 1〉 外國의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課稅制度	111
〈附錄 2〉 1993年 稅制改編(案) 中 實名制 實施에 따른 稅制補完	126
〈附錄 3〉 金融實名制 實施 主要 日誌	140
〈附錄 4〉 金融實名制 關聯 法令 全文	143
〈附錄 5〉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1993.8.12)	166
〈附錄 6〉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 細部基準(1993.8.20)	179
〈附錄 7〉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 細部基準(Ⅱ)(1993.8.31)	184
〈附錄 8〉 金融實名 關聯資料 通報業務에 關한 指針	187

表 目 次

〈丑 1〉 金融實名制 推進日誌	15
〈丑 2〉 金融資産所得 課稅推移	18
〈丑 3〉 緊急命令과 既存法律과의 主要差異點	30
〈丑 4〉 GNP 成長率, 地價上昇率과 物價上昇率	38
〈丑 5〉 中小企業의 不足運轉資金 調達 方法	42
〈丑 6〉 實名制 實施以後 發表된 主要 中小企業 支援對策	42
〈丑 7〉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의 金利推移	60
〈丑 8〉 主要 通貨指標 推移	60
〈丑 9〉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現金通貨推移	60
〈丑 10〉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證券市場 動向	61
〈丑 11〉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債券市場 動向	61
〈丑 12〉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換率推移	62
〈丑 13〉 金融圈別 受信動向	62
〈丑 14〉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私債金利 動向	63
〈丑 15〉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實物價格 動向	63
〈丑 16〉 實名確認 및 轉換現況(10.8 現在)	64
〈丑 17〉 綜合所得稅率의 國際比較	84
〈丑 18〉 勤勞所得者 免稅點의 國際比較 (所得稅 免稅點/4人家族 平均所得)	85
〈丑 19〉 主要國의 法人稅率	88
〈丑 20〉 主要國의 相續稅制度 比較	91
〈丑 21〉 主要國의 贈與稅制度 比較	92
〈丑 22〉 所得階級別 累積所得 比率(1992年, 都市家計年報)	97
〈丑 23〉 所得種類別의 지니係數 (都市家計年報 所得 10분위 資料 利用)	97

I. 金融實名制란 무엇인가

1. 金融實名制의 概念

金融實名制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명 또는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가 관행으로서 이루어져 왔는데, 금융실명제란 바로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 금융거래의 實名化를 의무화하는 법률적 장치의 마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금융자산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것을 포함한다. 금융실명제는 금융자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금융실명제를 금융실명거래의 의무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시행으로 분류해 볼 때,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시행방안은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한 후 시차를 두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 금융실명제 시행방안이 금융실명거래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단계적 시행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거래의 의무화를 통해 금융실명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킨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아울러 전면적 동시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특히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5년 후로 연기한 것이다.

2. 金融實名制의 目的

가. 金融去來秩序의 正常化

금융실명제의 당면목적은 실지명의를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여 변칙적 금융거래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건전화시키는 데 있다.

실지명의를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함으로써 우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거래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은 음성 불로소득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것은 금융실명제가 돈세탁, 私債 등 주로 陰性資金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억제함으로써 대형 金融事故 등의 事前豫防에도 一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명령은 우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실지명의를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우선 금융기관과의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영수증 처리 등이 미흡한 일반상거래의 정상화를 선도하는 효과가 있다.

나. 租稅衡平提高를 위한 與件造成

금융실명제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綜合課稅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는 조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용과 발전을 유도하고 경제의 형평성

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1996년 이후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금융실명제는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의 實質 歸屬者를 밝힘으로써 종합과세가 가능한 여건을 창출하는 制度改革이다. 즉, 실명거래의 의무화는 금융자산소득의 人別合算을 가능하게 하여 累進·綜合課稅를 통해 조세형평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제가 정착된 후 종합과세제가 시행되면 소득종류간·소득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조세의 세원관리가 용이해짐으로써 탈법적 상속 또는 증여 등 각종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不正腐敗 및 社會不條理 除去

그동안 비실명제는 脫稅 이외에도 뇌물수수·부동산 투기·탈법적 정치자금의 운용 등에 윤향유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과 비리는 경제적 낭비를 초래했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협했다. 금융실명제는 음성적 자금거래 소지를 줄임으로써 마약, 밀수 등 지하경제를 척결 또는 축소하며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금융실명제가 단지 경제개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촉진하고 앞당기는 포괄적·근원적 개혁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동시에 공정한 경기규칙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그 결과 정당한 富에 대해서는 신뢰가 쌓이고 우리 경제의 운용원칙에 대한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만연한 탈세와 부조리를 일시에 근절시키고

사회정의의 실현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실명제는 단지 경제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것은 실명제가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돈세탁(money laundering)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실명제가 시행되는 나라 중 強行法에 의해 실명제를 일시에 전면시행한 사례는 없다. 실명제는 그동안 정착되어 온 금융거래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다수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명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관행과 조세제도의 개혁뿐 아니라 비실명 시대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시정하는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3. 金融實名制의 推進經緯

가. 金融實名去來制에 관한 法律制定(7·3조치) 및 實施留保

1) 金融實名去來制에 관한 法律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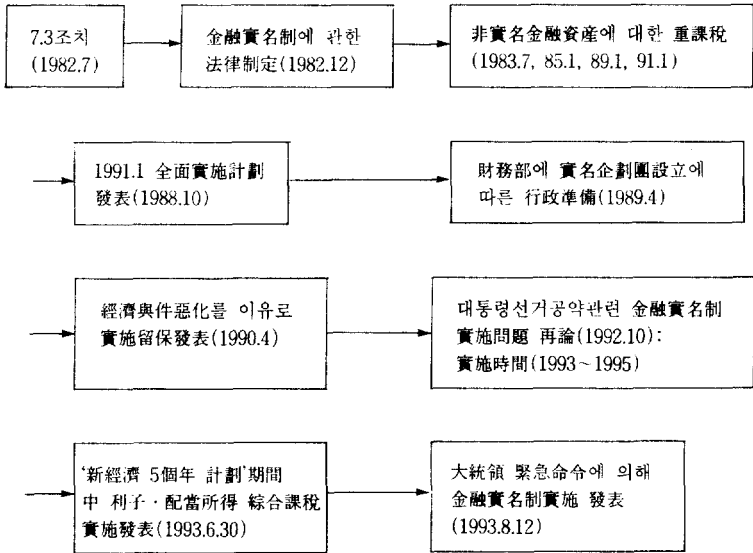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비실명거래를 허용하였다. 1961년 제정된 「預金·積金 등의 祕密保障에 관한 法律」은 비실명거래의 허용을 명문화한 것인데, 이것은 당시 국내 저축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금을 제도 금융권으로 유도하려는 조치였다(〈부록 4〉의 3 참조). 그러나 비실명거래를 허용해 온 결과 음성적인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금융거래가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누적되었다. 1982년 당시에는 私債가 1조 1천억원 규모에 달하여 총통화(M2)의 7%를 차지하는 등 지하경제 규모는 거대한 공룡처럼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5월

〈표 1〉 金融實名制 推進日誌

일 자	주 요 내 용
1961. 7.29	무기명·가명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82. 7. 3	정부, 「사채양성화와 관련하여 실명거래 실시와 종합소득세 제 개편 방안」 발표
1982. 7.15	정부, “1983년 7월 1일 이후 가명·무기명 형태로 있는 예금 등 금융자산은 실명화될 때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
1982. 8. 3	정부, 모든 금융자산 거래에 있어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기존 가명 예금의 자유로운 인출을 허용키로 하고 실명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반영키로 함.
1982. 8.13	정부, 민정당, 7.3조치 일부 수정, 1983년 6월 30일까지 실명화하는 일체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이자·배당 및 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는 1983년에 재검토
1982.10.25	재무부장관, 국회 재무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금융실명거래 제 관련 법안들이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밝히고 “다시 보완하거나 주식 사채 등을 실명거래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다”고 확인
1982.11.22	민정당, 금융실명제 수정안 발표, “무기명·가명 금융소득에 대해 1983년 7월 1일부터 실명보다 5% 높게, 1985년 1월 1일부터 10% 높게 각각 차등과세하며, 실명제의 전면 시행시기는 1986년 1월 1일 이후 전산화 등 행정준비와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1982.12. 2	실명거래법 국회 수정 통과. 기존 경제질서에서의 충격, 전산화 등 행정준비의 미흡 등을 근거로 정부가 제출한 「실명거래법안」 수정. 실명제의 전면 실시는 1986년 이후로 연기. 비실명에 대한 단계적 차등과세로 실명화 유도.
1982.12.3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일부 시행
1987. 5.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발족(한국은행),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섬.

일 자	주 요 내 용
1987.12	노태우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경제의 도덕성 회복 및 부의 공정배분의 경제윤리를 내세우면서 '금융실명제' 실시 공언.
1988.10.24	경제기획원,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에서 토지기록 전산화와 종합토지세제를 도입 정착시킨 후 19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1989. 4.11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실시준비를 위한 대책기구로서 재무부 산하에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이 발족(총괄반, 금융반, 증권반, 세제반, 세정반으로 구성, 1992년 말까지 활동기로 함)
1990. 1.17	정부, 1991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할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세제상 구제조치를 해주는 등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금융실명제와 함께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의 합산과세도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자산소득은 현행 제도처럼 분리과세한다고 발표.
1990. 4. 5	정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서 금융실명제 무기한 연기를 발표. 보완대책으로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로 높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
1992.10.14	재무부, 경기악화를 이유로 실명제 실시가 현시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
1992.10.19	경제기획원, 실명제 조기 실시는 실물투기 우려가 크다고 지적.
1992.10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문제 재론
1993. 1.13	새 정부, 출범 뒤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을 곧 발족하겠다고 발표.
1993. 1.29	민자당, '선 경제회복 후 금융실명제 실시키로' 방침 결정.
1993. 2.17	재무부, 새 정부 임기중 시행대비 「실명제 실무반」편성 기초작업 착수.
1993. 6.30	「新經濟 5개년 계획」 세제개혁 부문에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실시계획 포함.
1993. 8.12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지금까지의 경위



李·張 어음사기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82년 7월 정부는 실명거래제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의 실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소위 7·3조치인데, 이에 따라 당시 국회는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부록 4>의 2 참조).

2) 전면적 실시의 유보

그러나 당시에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중 실명거래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3조와 관련조항의 실시를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도록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유보되었다.

사실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1982년 당시 금융실명화율은 약 60%에 불과할 정도로 비실명금융관행의 뿌리는 깊었고 전산 및 세무행정 처리능력도 실명제 실시에 대처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더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가 잔존하여 경제성장률은 1980년 -3.7%, 1981년 5.9%, 1982년에는 7.2%를 기록하고 있었다. 국제수지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어 1980년 경상수지적자는 53억 2천만 달러, 1981년 46억 5천만달러, 1982년 26억 5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경제전반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외로의 자금유출, 금융권에서의 자금이탈, 각종 실물투기 성행, 증시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곤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여 결국 실명제 실시는 유보된 것이다.

실명제 실시를 유보한 후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1983년 7월부터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폭을 단계

〈표 2〉 金融資産所得 課稅推移

(단위 : %)

	실명거래자산		비실명거래자산			
	'~'90.12.31	'91.1.1~	'83.7.1~ '84.12.31	'85.1.1~ '88.12.31	'89.1.1~ '90.12.31	'91.1.1 ~
소득세	10.0	20.0	15.0	20.0	40.0	60.0
방위세	1.0(2.0)	0	1.5(3.0)	2.0(4.0)	4.0(8.0)	0
교육세	5.0	0	5.0	5.0	5.0	0
주민세	0.75	1.5	1.125	1.5	3.0	4.5
합계	16.75 (17.75)	21.5 (21.5)	22.625 (24.125)	28.5 (30.5)	52.0 (56.0)	64.5 (64.5)

- 주 : 1. ()안은 연간소득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임.
 2. 방위세는 1991년부터 폐지.
 3. 1991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4. 주민세는 소득세의 7.5%임.

적으로 확대하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실명거래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3년 22.625%에서 91년에는 64.5%로 인상하였다.

또한 실명에 의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생산·확대하여 실명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예를 들어 가계종합예금, 저축예금, 세금우대저축 등을 보급함으로써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국세행정의 전산처리능력을 확충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3) 금융실명제의 전면적 실시발표(1988.10)와 유보(1990.4)

1982년 한차례 유보되었던 금융실명제는 1987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각 후보의 공약으로서 다시 제기되었고 1988년 10월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을 통해 19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로부터 1989년과 1990년 초에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금융실명제 실시논의는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1989년 4월에는 재무부내에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이 발족되었고 정부관련부처 및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금융실명제추진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개선방안, 예상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을 둔화, 국제수지 상황악화, 증시침체, 부동산투기 조짐 등 경제위기가 제기되면서 실명제 실시는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거치고 결국 유보되었다. 그러나 1990년 4월의 실명제 유보는 국민일반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경제상황 악화와 준비상황 미비를 명분으로 행해짐으로써 국민들의 반발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였다.

4)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찬반논리의 내용

10여년에 걸친 위와 같은 논란과정은 실명제의 실시여부에 관한 논란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좁은 의미의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의 마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다고 할 때 1982년에는 금융실명거래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동시실시를 전제로 금융실명제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금융실명제 적극 추진론자들은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조속히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실명제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론자들은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명거래 의무화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였다. 즉,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전산망 확충 실태를 살펴볼 때 금융실명제의 전면적 동시실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법적 강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전례가 없는 일이며,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는 대부분 관행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는 점도 실명제 연기론의 논거가 되었다.

1988년 이후 다시 재개된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논란은 1982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89년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여부에 대한 찬반논의도 존재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실명제 실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서 논의내용도 실명제의 구체적 실시방안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당시 거론되었던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앞에서 정리한 개념에 기초하여 대별해 보면 다음의 세가지다.

첫째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과 종합과세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실명거래법을 시행한 뒤 시차를 두고 종합과세제를 실시하는 방안, 세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먼저 실시한 뒤 실명거래법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들 각 방안들은 장기적으로 금융실명거래법 도입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정착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거를 갖고 있었다.

제1방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법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동시에 실시될 때 금융거래 질서 건전화와 조세형평 제고라는 금융실명제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시차적 적용은 다른 편법들의 출현으로 금융실명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동시실시할 경우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과 전산처리능력 등 행정업무 수행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시행방안이 강구되었다.

단계적 실시방안으로서 제기된 위의 제2방안의 경우 우선 금융실명거래법을 실시하면 금융실명제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세제 개편을 통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함으로써 조세행정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단기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단계적·점진적 시행을 통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가 강제적인 법에 의해 정착된 사례가 없고, 외국의 경우 오랜 금융관행에 의해 실명거래가 정착되었다는 점을 제기하며 금융실명거래제 우선시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실명거래법의 시행은 과세형평과 같은 공공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고객에게 실명거래 의무에 따른 부담을 먼저 지우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기된 방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여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킨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명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다.

나. 金融實名制 實施(1993년 8월 12일 20시)

10여년간 논란이 되었던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실시되었다. 199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역시 각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하였던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전격적으로 발표되었고 긴급명령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긴급명령에 의해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세제부문계획에 따라 1995년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19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997년 5월 첫신고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구체적인 실명제 실시방안으로 제기되었던 3가지 방안 중 제2방안으로서 실명거래의 의무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단계적으로 분리 실시하는 3단계 실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II. 金融實名去來에 關한 緊急命令의 背景과 主要內容

1. 緊急命令의 背景

금융실명제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그 필요성에 비추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나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그동안 실시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文民政府가 출범하고 경제적 재도약을 다짐하는 우리 경제는 成長潛在力의 培養을 위한 체질개선과 고통분담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각종 不勞所得의 源泉을 축소하고 公平課稅를 도모하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회복의 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금융실명제 등 제도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자금의 제도권 이탈,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를 가속화시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금융실명제는 실시 초기에 자금경색과 시중금리 상승을 가져와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아울러 실명제 실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명제 실시 연기가 경기부양책이 될 수는 없었다. 즉, 금융실명제 시행을 연기하더라도 경기가 일시에 호전되리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 갈등만 심화시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을 통해 실시가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문제가 많았다. 기존의 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기존 비실명자산의 비실명 인출을 무기한 허용하여 대규모 자금 이탈을 방치하는 맹점이 있었다. 또한 보험을 비롯한 일부 금융자산이 실명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자금이체 및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 실명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였으나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거쳐 실시할 경우 논의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여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실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긴급명령에 의한 실시가 불가피했던 것이며 긴급명령에 의한 실시는 무엇보다도 비실명에 의한 자금이탈을 방지할 수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탈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2. 主要內容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 둘째,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 셋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긴급명령의 주요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金融機關과의 去來時 ‘實地名義(實名)’ 使用義務

1) 은행·증권사·보험사·단자사·농협 등의 단위조합·우체국·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금·적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은행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고 지급할 때, 증권사에서 주식이나 무기명채권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실지명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까지 실명거래가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다.

2)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개인의 경우)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으로 확인을 받는다.

3) 벌칙조항으로서 실명거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나. 既存 非實名 金融資産에 대한 措置

1)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引出을 禁止한다.

2)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내(1993년 8월 12일~1993년 10월 12일)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설정한다.

3)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첫째, 실명전환 계좌별로 다음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

- 20세 미만(미성년자)=1,500만원 이하
- 20세 이상 30세 미만=3,000만원 이하
- 30세 이상=5,000만원 이하

둘째, 실명전환으로 상법·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내에 당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동법

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실명전환으로 증권 거래법상 주식소유제한규정인 상장당시 비율 또는 10%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내에 당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셋째, 종전에 실명형태, 예를 들어 차명으로 예입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종전의 명의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과거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한다. 즉, 일반저축의 경우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20%(주민세 포함 21.5%)와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60%(주민세 포함 64.5%)의 차이만큼,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비과세 또는 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세율과 20%(주민세 포함 21.5%)의 차이만큼 소득세를 추징한다. 이것은 실명전환을 이용하여 증여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첫째, 경과기간에 따라 실시일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과일수	징수율
의무기간 경과후 실시일로부터 1년간	10%
실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20%
실시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30%
실시일로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	40%
실시일로부터 4년 이상 5년 미만	50%
실시일로부터 5년 경과후	60%

과징금은 당해 금융자산에서 원천징수한다.

둘째,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일 이후(1993년 10월 13일부터)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율을 현행 64.5%(소득세 60%, 주민세 4.5%)에서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로 인상적용한다.

5) 高額現金引出 등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첫째,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인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하는 것을 억제한다.

둘째, 이미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의 매매, 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점포별 월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단,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실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金融去來情報의 秘密保障 強化

긴급명령은 명령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밀보장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해 요구할 때

둘째, 조세법률에 의해 조사할 때

셋째, 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이 감독 검사의 필요에 의해 요구할 때

넷째,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다섯째, 다른 법률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제공을 요구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문서에 의하여 점포별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정보제공 요

구를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거부 의무를 부여하고 제공받은 금융 정보의 타인(제3자)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벌칙조항으로서는 정보를 누설한 금융기관 임직원, 부당한 정보제공요구자, 업무상 知得한 정보의 누설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처벌은 併科가 가능하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라. 既存 實名法과의 比較

기존 실명법과 비교해 볼 때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제 실시내용은 크게 강화되었다.

먼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한 실명화 의무가 종전 실명법의 경우 형식적으로 부과되는 데 그쳐 실명화를 회피하려는 자금이동이 무기한 허용되고 있는 반면 긴급명령의 경우 철저히 부과되었다. 이것은 실명화를 회피하려는 자금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융거래 실명화의 실효성과 의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법은 비실명인출을 무기한 허용하고 특히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시행일 현재의 규모 이내에서 인출과 예탁을 계속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 수표 등 일부자산은 실명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자산 및 금융기관이 실명화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심각한 자금이체 현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노출을 꺼리는 음성자금이 실명화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으로 대거 이체될 경우 심각한 자금수급 불균형 및 실명화 대상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금융자산에 대해 비실명거래가 계속 허용될 경우 실명제의 형평성 및 실효성이 저하되고 실명제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따라 긴급명령은 비실명에 의한 인출을 일체 금지하고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의 실명전환에 대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여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당초의 課徵金은 原本의 5%로 설정되어 있어 너무 낮고 의무기간 종료 이후 실명전환 인출까지의 기간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실명전환을 유도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 긴급명령에서는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실명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채권, CD, 자기앞수표 등도 발행 및 지급단계에서 실명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둘째, 기존법은 租稅脱漏分에 대한 租稅追徵 意志가 약한 반면 긴급명령은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기존법은 실명전환된 계좌 중 미성년자 고액계좌(700만원)에 한해서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資金出處調査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경우 이를 계기로 세부담 없는 死前相續, 贈與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명령은 명의변경된 계좌에 대해 차등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하고, 의무기간내 실명전환된 계좌 중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탁된 자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실물보유되고 있는 기발행채권, CD 등이 금융기관과 거래되는 경우 점포별 총가액이 월 5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실명전환으로 타법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긴급명령은 기존 실명법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법은 기업공개요건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긴급명령은 상법(자사주식취득금지), 증권거래법(내부자거래금지), 공정거래법(상호주식출자 제한 등) 등 타법규 위반 경우에 대해 경과규정을 설정하

〈표 3〉 緊急命令과 既存法律과의 主要差異點

	긴 급 명 령	기 존 법 률
제 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실명대상	-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체	- 보험 등 일부 금융기관 누락
기존 비실명 자산 처리	- 비실명인출 일체불허 - 실명전환의무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이 기간 이후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90% 높은 이자·배당 소득세 및 매년별 10% 최고 60%의 과징금을 징수	- 비실명인출 무기한 허용 · 정기예금 등은 동일규모 내에서는 계속하여 비실명 거래 허용 - 실명전환기간 6개월로 하고 그 이후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5%의 과징금 부과
실명확인 의무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실명전환자에 대한 조치	- 연령별로 기준을 차등화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 면제 - 실명전환전의 명의를 비실명으로 보아 과거에 부족징수한 5년간의 이자 배당소득세를 추징	- 미성년자(700만원 이상) 이외에는 일체 면제 (신설)
비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실명 21.5%에 비해 4.5배 수준인 96.75%로 중과	- 실명 21.5%에 비해 3배 수준인 64.5% 부과
금융정보 비밀보장	- 정보제공요구절차 요건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 · 문서에 의한 요구 · 금융기관 점포별로 요구 -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정보제공에 대한 거부 의무 부여 - 비밀보장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경과규정	- 실명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타법률 위반사실이 1년 이내에 시정되면 벌칙규정 적용 면제	(신설)

고 있다.

넷째,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보장함에 있어서 기존법에 비해 긴 급명령의 경우 그 명칭에 반영된 바와 같이 매우 강력하다. 정보제공 요구 절차요건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부당한 정보제공요구 거부 의무를 부여하며 비밀보장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3. 몇 가지 爭點과 政府의 立場

가. 金融實名制 實施時期의 問題

그동안 정부는 경제개혁보다도 '신경제 100일 계획' 등 경기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가시적인 景氣浮揚效果가 나타나지 않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실명제 실시초기에 자금경색과 시중금리 상승을 가져와 경기회복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가 예상되면서도 계속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실시논의 과정에서의 국론분열 등으로 인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동참분위기가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점에서 실명제 실시의 단행은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명제 실시는 각종 부조리와 不正腐敗의 소지를 축소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타의 경제개혁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이와같은 일정의 제시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증대시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상황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司正活動, 公職者 財産公開, 수차례의

실명제 실시설 등으로 음성자금의 상당부분이 이탈한 후에 실시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가급적 조속히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나친 줄속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신중을 기하였다. 기존 실명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종 대안 및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의 기본골격에서부터 세부 시행계획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전문인력만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준비기간 단축은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명제 실시 이전에 어느 정도 음성자금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투기 억제시책, 현재의 부동산 시장동향, 자금해외유출이 제도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자금은 대부분 현금과 차명예금 혹은 무기명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금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실명화되어 금융기관으로 환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명령에 의해 예고없이 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음성자금의 이동을 막을 수 있었다.

나. 私有財産權 侵害의 問題

긴급명령에 의한 기존 비실명자산의 인출금지, 의무기간 경과후의 과징금 부과, 實名轉換金融資産에 대한 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들이 소급입법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긴급명령에 의한 기존 비실명자산 인출금지가 遡及立法이라는 주장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긴급명령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인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전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명전환을 조건으로 인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비실명 자산에 대해 高率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실명에 의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저축상품을 확대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이미 예고한 상태이다. 오히려 실명제 실시 이후의 신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비실명거래를 일체 불허하면서 기존에 거래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비실명거래를 허용한다면 이는 기존 去來分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로, 의무기간 경과후의 實名轉換分에 대한 과징금을 60%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실명전환을 기피하지 않는 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정착과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실명 금융자산의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비례하여 비교적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유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지나친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과징금을 증여세의 최고세율인 60%로 설정한 것이다.

셋째로, 현행법 아래서 금융기관 관행으로 허용되어 온 차명거래를 事後立法에 의해 소득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가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差等利子所得稅 追徵은 실명전환을 악용한 변칙적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의 금융자산이 실명전환을 가장하여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편법적인 사전상속 및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의 추징은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세에 비추어 볼 때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조치이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실명으로 간주되던 자산 중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사소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 借名去來의 實名化 問題

차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과제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소득세 추징 등은 오히려 실명전환을 억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과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긴급명령은 신규계좌의 경우 본인에 의한 직접개설을 원칙으로 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주선에 의한 차명거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소득세 추징 등은 실명전환을 위장한 상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규정된 것이다. 이번의 긴급명령으로 명의인의 양해없는 借名 즉, 盜名의 경우 실명전환 유도조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로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차명의 경우에는 실명전환 유도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명자산에 관한 한, 긴급명령은 실명전환을 가장한 상속·증여행위를 단속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차명자산의 실명전환은 금융실명제가 사회관행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가 2년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차명계좌의 본명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高額計座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殘高證明을 계좌주에게 정기적으로 登記郵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자산 명의인과 실소유주간의 세금정산을 복잡하게 하여 차명의 본명전환을 유도하는 조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차명방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종합과세 실시를 위해서는 세법개정, 국세청·내무부 등의 전산망

확충, 세무행정인력 양성 등 선행되어야 할 준비에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현재의 80만명 수준에서 800만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는데 이러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전산망, 내무부 행정전산망 및 금융전산망의 연계와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양성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Ⅲ. 金融實名制 實施 關聯 副作用對策 및 補完措置

1. 副作用對策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3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금융관행을 강행법에 의해 변화시키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의 다소의 불편과 국민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치유해내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가. 不動産 등 實物部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을 꺼리는 금융저축의 일부가 제도금융권을 이탈하고 부동산 등 실물투기 부문으로 이동하여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상실되고 종합과세를 통해 세부담이 증가하면 금융자산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골동품, 보석·귀금속, 서화 등의 실물자산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투자하려던 자금이 대

체 투자수단을 찾지 못하고 실물투기 자금화하여 최근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금융자산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왔기 때문이다.

〈표 4〉 GNP 成長率, 地價上昇率과 物價上昇率 (단위 : %)

	1988	1989	1990	1991	1992
지 가 상 승 률	27.5	32.0	20.6	12.8	-0.48
G N P 상 승 률	12.4	6.8	9.3	8.4	4.9
소비자물가상승률	7.1	5.7	8.6	9.3	6.2

주 : 지가상승률은 1992년 3/4분기까지의 상승률.

그러나 일단 부동산 투기는 향후 投機抑制策을 어느 정도 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기억제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期待收益率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향후 시가 표준액이 계속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綜合土地稅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토지거래 정보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捕捉率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의 철저한 봉쇄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실명제 시행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 예외 없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土地去來許可 대상지역 및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특정지역을 확대하여 實物投機部門으로의 자금흐름을 차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993년 8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확대 지정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전 국토의 90.5%로 확대된다. 그리고 地價動向 監視班을 신규편성 운용하며 유관기관 거래동향 감시반을 신규운용한다. 부동산가격에 대한 감시·통제도 강화하는데 대도시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 등 부동산투기 우려 지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하며 부동산투기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가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

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을 월 2회 파악하면서 구체적 투기사례가 포착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가 급등지역,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건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중견화가 이상 예술가, 주요창작 예술품, 골동품, 보석 판매업소 등에 대한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기나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세무조사를 착수함으로써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나. 金融市場의 安定化 對策

현재 금융권자금 중 假名計座의 자금은 2조 5천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그러나 借名計座의 자금을 포함하면 약 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금융자산 330조원의 10%, 총통화 100조원의 3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긴급명령은 금융저축의 제도권 이탈방지를 위해 非實名貯蓄의引出을 금지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2개월) 중 3천만원 이상의 高額現金引出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액예금인출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초기에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경색되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이 자금조달측면에서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금인출은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보유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면 통화승수를 고려할 때 급격한 通貨信用 供給縮小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는 한국은행에 '금융시장 안정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였고, 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여 總通貨供給水準에 비해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분간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장단기 금리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금인출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RP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인출 급증시 증권금융의 시중은행에 대한 回轉信用限度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금고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 단기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에 資金梗塞狀態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다. 證券市場의 安定化 對策

다른 금융상품보다도 주식의 거래는 가장 낮은 실명화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2년 9월말 현재 실명화율은 96.6%(금액기준)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借名口座 및 1인 多數口座를 감안하면 실명화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대주주지분은 특수 관계인, 동일 계열분 상호보유, 각종 단체, 법인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실제 대주주지분율은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실명제를 시행함에 따라 분산분은 賣物化되어 추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는 장기적으로 증권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지명리에 의한 주식거래가 정착됨으로써 內部者去來를 어렵게 만드는 등 공정거래촉진 효과가 있고, 장기 투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의 차별과세,

資本 損失 移延制度 등 장기투자나 위험이 적은 투자 등 특정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시킬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증권시장 구조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율 조정을 통해 주식매도를 연기시켜 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雷同賣買性向이 강한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상 일반투자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충격에 따른 증권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단기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증권시장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식매수 확대를 유도하고 투신사의 국고차입금(1조원)의 단계적·점진적 상환을 촉진하며 증권사와 투신사의 자금난 발생시 은행이 신속히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실명제 실시 직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8월 16일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증권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되 시장위축 우려가 나타날 경우 投資心理安定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주식수요 확대방안 및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유입 촉진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투신사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 매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며 채권시장도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관투자자의 채권인수 확대 등 채권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여 시장활성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라. 中小企業 支援對策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私債市場에서의 거래가 중지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

〈표 5〉 中小企業의 不足運轉資金 調達 方法

(단위 : %)

구 분	은행융자	제2금융권	사 채	회사채·주식
5~ 19인	46.6	12.7	40.7	0.0
20~ 49인	68.7	9.5	21.8	0.0
50~ 99인	77.4	10.3	11.3	1.0
100~199인	76.5	15.1	5.9	2.5
200~299인	90.6	5.7	3.7	0.0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1/4분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17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23.2%가 不足運轉資金의 조달을 사채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연간 이용하는 사채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한다. 특히 규모가 영세할수록 私債依存度가

〈표 6〉 實名制 實施以後 發表된 主要 中小企業 支援對策

내 용	지 원 시 기	지원규모	취급처	지원대상 및 특징
긴급운전자금 지 원	8.13~	3,830억원	전시중은행	적격 거래업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 금 지 원	8.16~9.15 신청 3개월간 지원	2,000억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20인 이하 영세 소기업 대출결정시 신용보증 기금에서 위탁보증
신용관리기금 어음 재매입 한 도 증 액	8.16~9.15 신청 4개월간 지원	1,200→ 2,400억원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영세제조, 유통업체 진성어음 우선할인
상업어음할인 한 도 폐 지	4.1~ 시행중	무제한	전시중은행	진성어음 대상은행의 적극적 어음할인 지시
신용보증기금 보 증 한 도 확 대	8.20~	긴급경영안정자금대상, 5천만원 이하 지원시 보증한도를 기존에 연간외형의 1/3까지에서 전체외형규모로 확대, 5천만~1억원 지원시는 1/3 → 1/2로 확대		

높아 종업원 20명 미만의 소기업은 私債依存比率이 39.8%에 달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궁극적으로는 신용위주의 대출관행 등 금융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처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급운전자금을 1차로 3,830억원 지원하고 추가로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緊急經營安定支援資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에 금융시장안정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신용관리기금의 어음再買入限度를 확대하여 현재 1,2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호신용금고를 통한 영세기업지원도 확대하는데, 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眞性어음 여부를 불문하고 재할인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할인대상어음을 확대한다. 그리고 신용금고의 수신기반을 강화하여 시중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이 자금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여수신금리를 동시에 1%p 상향조정한다.

중소기업 어음할인방식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대출 중심에서 어음할인도 적극 취급하도록 하되 영세중소기업이 소지한 어음 중 무자료어음인 경우에도 진성어음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할인지원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자금(정부융자 또는 출연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先給金 支給比率도 확대한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워진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기관이 공사,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급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세제지원으로서는 세액감면제도를 계속 시행하며 限界稅額制度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제도를 상시 운용하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마. 資金의 海外流出 防止對策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외환·자본 자유화의 추진은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보다 높혀줄 것이다. 해외자산으로의 자본이동은 높은 수익률이나 탈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의 노출을 피하려는 동기에 의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과 국내 외간의 금리격차, 투자수익률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자금의 해외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자금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實名露出을 꺼리는 자금이 상거래 위장이나 個人送金, 携帶搬出 등의 방법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다.

먼저, 개인의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증여성 개인송금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를 강화하여 통보대상을 연간 1만달러 이상에서 연간 1만달러 또는 1회 3천달러 이상으로 조정하고 통보시기도 매월에서 매주로 변경하였다. 국세청은 기존의 인별자료와 연계하여 불법유출 혐의 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외국환은행은 환전시 해외송금 필요사항(인적사항, 송금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외화, 고액 원화수표 등의 휴대반출 방지를 위한 검색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재산도피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재외 재무관이나 세무관을 통해 자금의 해외유출 정보자료 수집을 강화하며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상거래 등 경제활동위축을 야기하는 국민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의 우려에 따른 국민불안심리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税金脱漏嫌疑가 명백히 나타난 경우로 제한하여 운용한다. 이와함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하 및 공제액 조정을 통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課標現實化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도록 한다.(<부록 2> 참조)

2. 金融實名制 實施 1次 補完措置(1993.8.31)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15일간을 평가했을 때 실시전에 우려했던 주요 부작용은 일단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근거없는 불안심리가 생겨났고 이것이 상거래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기본원칙을 지켜가면서 상거래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근거없는 국민불안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보완조치를 통해 주로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근거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中小企業金融支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1993년 8월 31일 당시 경제상황과 보완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金融實名制 實施初期의 經濟狀況

금융실명제 시행초기에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등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식가격이 급락하고 채권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추진해옴에 따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었다.

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단기운용이 늘어 금리가 안정되었고 거래도 평소 수준을 회복하였다. 주식시장은 금융실명제 실시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뒤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채권시장은 거래규모가 평소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금리도 다소 상승하고 있었다.

한편 제1·2금융권의 여·수신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부도율도 안정되고 있었다. 현금통화는 현금선호와 은행예입 위축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후 평소 패턴으로 회복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나. 對策推進方向

근거없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는 크게 세무행정상의 보완조치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체적인 대책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명으로 예금한 사람이나 앞으로 실명으로 예금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국세청 통보 경우에도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명백히 나타난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둘째, 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액의 공제액 조정을

통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없도록 한다.

셋째, 자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나간다. 특히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

넷째, 증권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장위축의 우려가 나타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다. 稅務行政 運用方向

1) 實名轉換 資料의 國稅廳 通報에 따른 資金出處調査

실명전환 자료가 통보되면 국세청이 예외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종전부터 실명으로 계속 거래해온 예금이나 신규로 실명가입한 예금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현재의 실명예금이나 앞으로의 실명예금은 그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즉, 실명제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이들 실명예금에 대해서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전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예금 중 계좌별로 일정금액(예: 30세 이상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나, 통보된 자료 중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를 하지 아니하며 탈세 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하게 된다.

일정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사업경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기, 증여,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한 후 疏明이 안될 경우 제한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실명전환을 위장하여 변칙적인 증여나 탈세 등을 하지 않는 한, 실제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하여 세무조사나 稅金追徵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인하하여 실제 제 실시로 세부담이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

2) 高額 現金引出에 따른 國稅廳 通報資料의 處理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소급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8.13~10.12)중 고액현금인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 초기에 제도금융권의 예금 대량 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좌별로 2개월간의 순인출액(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므로 동기간 중 인출한 경우에도 순인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순인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에도 그 자금이 공장건설, 원재료매입,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1세대 1주택의 취득이나 이사·혼례비 등의 가계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그 사용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인출자금이 부동산투기나 탈세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3) 零細商人和 中小企業의 課稅資料 露出에 따른 稅金負擔 增加

실명거래로 과세자료가 양성화되어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 것을 걱정하여 은행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매일매일의 은행거래상황(입출금)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물품대금의 온라인 송금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의 거래실적이 노출될 경우 과거 탈루된 세금까지도 추징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온라인 입금 등 상거래로 은행을 이용하는 자료는 현재도 일체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보하지 않는다. 금융거래가 아닌,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과거의 판매실적이나 소득금액을 역추적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사례는 없게 된다. 따라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이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금융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과세자료가 양성화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하여 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의 경우 금년 하반기 거래분부터 연간매출액 1억 2,000만원까지는 일정금액의 세금을 대폭 경감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한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도 거래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것이다. 경감대상은 일반과세자의 75%로 58만명에 달한다. 또한, 이 제도의 적용시기는 실명제가 금년 하반기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1994년 1월 25일 확정 신고시에 경감혜택이 가도록 한다.

1994년 5월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과 소득세 서면신고 기준율을 현

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내년 소득분부터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配偶者名義 預金の 實名轉換

배우자명의 예금을 반드시 실명전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실명전환시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명의 예금을 반드시 남편명으로 실명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운영결과 축적된 가계자금, 생활자금 등을 배우자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가계자금 성격의 예금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도 감안해야 하고, 이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예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명의예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을 실명전환할 경우 외에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으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기, 증여,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예금이 가계자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과도한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재산형성 기여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금년 세법개정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 결혼생활시 상속세 공제액을 현행 2억 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년 결혼생활시 증여세 공제액을 현행 3,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다.

5) 實名確認 關聯 不便解消

재외국민(해외장기체류자 포함)의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외

국민 등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의 경우는 본인의 實名確認證票 없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로만 실명확인 및 전환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자동이체 계약된 아파트 관리비, 사회복지성금, 신용카드대금에 대해서도 실명확인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신용카드대금은 지급계좌에 대해 10월 12일까지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근로자 증권저축 계좌 등에 대한 실명전환전 재투자를 허용한다. 근로자 증권저축 등 동일계좌 안에서 자동 재투자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0월 12일까지 계좌를 실명확인토록 하고 그전에도 재투자가 가능토록 한다.

라. 金融關聯 補完對策

1) 通貨의 彈力運用을 통한 金融市場 安定

금리수준이나 市中資金事情動向을 감안하여 통화를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되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재무부와 한은이 '通貨金融政策 實務協議會'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수시협의하여 대처하고 금융권별 여수신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신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제도금융권의 수신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애로나 금리상승 등을 우려하여 資金假需要現狀이 나타나서 자금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2)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強化

이미 시행중인 자금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일일점검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 이미 지원한도가 소진된 은행에 대해 '긴급운전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방법으로 1차에 이어 3,000억원을 추가 지원토록 조치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좌대출 1회전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 유도한다. 금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도래시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연장지원토록 유도한다.

한편, 보험사에서도 1,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영세기업을 지원하는데, 500억원은 보험회사에서 직접대출하고 500억원은 신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相互信用金庫의 어음재매입재원으로 사용한다.

3) 證券市場 安定

증권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장위축 우려가 나타날 경우 투자심리안정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주식수요 확대방안 및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유입 촉진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간다.

이와 아울러 투신사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 매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간다.

4) 債券市場 安定

현재 채권시장은 거래가 늘어나는 등 회복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금융실명제 실시전에 비하여 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채권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등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은행신탁, 투신, 증권, 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채권인수를 확대한다. 그리고 증권사의 거액RP

제도를 개선하고 회사채인수시 금융지원을 하고, 거액RP 最低發行單位 下向調整(5,000만원→3,000만원) 및 중도환매를 허용한다. 또한, 증권회사에 채권인수자금을 지원(2000억원)하고,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수익률을 상향조정(환매수수료 인하)하며, 회사채·금융채 등 채권발행물량조절을 강화한다.

5) 第2段階 金利自由化 推進

금리자유화는 금융개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다소 약화된 금융중개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동화된 시중자금이 제도 금융권으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신금리가 주된 대상인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명전환시한 이후의 금융시장동향 등 제반 경제여건을 보아가면서 연내에 실시한다.

3. 金融實名制 實施 2次 補完措置(1993.9.24)

1993년 8월 31일 발표된 1차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통보 혹은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태를 감안하고, 그리고 비실명자금의 실명전환실적이 아직 미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차보완대책으로 1993년 9월 24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長期低利債券을 매입하면 과거 세금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여 비실명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후속조치의 발표 당시의 경제상황을 살펴본

뒤 후속조치의 내용을 소개한다.

가. 發表當時 經濟狀況

1) 金融市場

발표 당시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초기의 불안정을 빠르게 극복하고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화증가율은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으로 높아졌으나 현금통화증가는 8월 하순부터 크게 둔화되어 '주말 증가 - 주초 감소'의 패턴으로 복귀하였다. 주식시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채권시장도 1차 보완 대책 발표 당시와는 달리 9월 들어 크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시장금리를 보면 회사채 수익률이 한때 14.5%까지 상승하였으나(9월 10일) 9월 23일 현재 13.3%로 실명제 실시전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었다.

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차명 및 가명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9월 24일 당시 계좌기준으로 42.1%, 금액기준으로는 58.2%를 나타내고 있었다.

2) 實物經濟

실물경제에 대한 실명제의 영향은 9월 24일까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였다. 다만, 서울지역의 1일평균 부도기업체수가 실명제 이전보다 다소 늘어 났으며, 1일 평균 부도금액도 소폭 증가하였다.

정상적인 도소매거래에서는 우려했던 판재위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무자료거래 비중이 높은 여세상의 매출은 다소 위축되고 있었다. 이러한 거래감소가 당시로서는 제조업체의 생산 및 매출감소

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으나 9월 24일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기업의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투자는 불확실성의 증대, 자금조달상의 애로 등이 겹쳐 중단 또는 연기사태가 발생하였다.

나. 後續措置의 背景과 內容

1) 3천만원 超過 現金引出時에도 國稅廳 調査 排除

純 引出額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는 실명제 실시 초기단계에 예금의 제도금융권 대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와 같은 대량인출 사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 일부 국민들은 현금인출자료가 세무자료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된 동 현금인출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課稅標準 陽性化 申告時 過去 稅金에 대한 追跡調査 排除

종전에는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액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가 있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종전의 무자료거래가 노출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거래를 회피하거나 資料陽性化를 기피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영

세사업자를 위하여 課稅特例規模(연매출 3,6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3) 利子·配當所得稅 追徵方法 改善

비실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할 때 과세시효기간(5년)내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에 부담이 크고 과거 원천징수자료 보관상태가 부실하여 세액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簡易計算方法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후 정산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원천징수자료의 보관부실 등으로 事後精算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관된 자료범위 내에서 사후정산하도록 한다.

4) 實名轉換에 따른 資金出處調査 緩和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 금융자산의 전환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예상하여 국민의 불안심리가 크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통보되어 온 실명전환자료를 인별로 집계 분석하여 자료의 계급별 분포 상황, 투기·증여·탈세 혐의 정도, 조사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고 조사의 실효성 및 금융실명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 금액기준을 인별로 2억원까지 완화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국세청 본청에서 자료를 일괄 집중관리함으로써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처리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 민원소지를 최소화한다.

5) 法人名義 實名化에 대한 稅務調査 免除

임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관리해오던 사실상 법인소유의 비실명자금을 기업자금으로 양성화시켜 생산적 자금으로의 환류방안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8월 12일 현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 광산, 농축수산, 건설, 관광운수업과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新設法人 및 休廢業法人은 제외)으로서 비실명자산을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후 1992년 이전에 조성된 자금에 대하여는 1992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1993년도에 조성된 자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9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할 경우에는 각년도 귀속분의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한다.

6) 贈與稅 自進納稅者에 대한 稅務調査 免除

개인인 비실명예금주는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 증여세 외에 종전의 사업관련 稅金脫漏分 등까지 일시에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실명전환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만 부과하고 종전의 사업관련 조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체 배제한다.

7) 長期低利債券 發行

가) 발행배경

자기명의 노출을 꺼려 비실명으로 남아있는 자금이나 실명전환 후 퇴장된 자금을 증여세를 부담한 것과 같은 수준의 長期低利債券으로 흡수하여 産業資金化를 유도하고자 한다.

나) 발행방안

발행주체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하고 최초 매입자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 채권성격 : 실명 등록채권
 - 1종채권 : 실명전환 계좌당 금액 30억원 미만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채권
 - 2종채권 : 실명전환 계좌당 금액 30억원 이상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채권
- 만기 : 10년
- 이자율 : 1종채권 연 3%, 2종채권 연 1%
- 발행단위 : 5,000만원
- 상환방법 : 만기시 원리금 일시지급식 복리채
- 청약 및 등록
 - 실명전환계좌가 있는 당해 금융기관 점포에서 청약
 - 청약기간 : 10월 1일 - 10월 30일(청약증거금 10% 납부)
 - 대금납부 : 11월 15일
 - 채권등록 발행일 : 12월 1일
 - * 채권등록기관 : 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

다) 조성자금의 활용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전액 예탁하여 장기설비 투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IV.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 經濟狀況과 向後展望

1. 經濟狀況

금융실명제 시행 초기의 금융시장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등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시가격이 급락하고 채권거래가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실명제 실시 2개월을 맞은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힘입어 시장금리가 실명제 실시전보다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행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시장별로 금융실명제 실시 2개월 후의 동향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가. 市場金利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시장금리는 실명제 실시전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회사채 금리는 실명제 실시 초기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8월 12일 대비 0.2%p 하락한 13.35%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Call 금리는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명제 실시일(8.12) 대비 1.34%p 하락한 12.02% 수준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거래규모도 평소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7〉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금리추이

	93. 7말	8. 12	8. 13	9. 13	10. 8	8. 12 대비
· 회사채 (3년, %)	13.20	13.55	13.55	14.30	13.35	-0.2
(거래량 : 억원)	1,185	2,200	1,841	6,013	3,276	1,076
· Call 금리 (%)	18.33	13.36	14.25	12.14	12.02	-1.34
(규모 : 조원)	2.2	2.4	2.3	3.6	3.6	1.2

나. 通貨動向

〈표 8〉 주요 통화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평균증가율, %)

구 분	92년중	7월	8월	9월
M ₂	18.4	18.9	20.3	21.4
M ₂ +CD	21.5	16.6	17.6	18.1
M ₃	21.5	21.0	-	-

현금통화는 현금선호경향 및 추석 현금수요의 증가 등으로 8월 12일 이후 9월말까지 약 5조원의 증가를 보였으나, 추석자금의 조기환수 등으로 10월중 약 2조 3천억원의 감소를 보였다. 자기앞수표 발행

〈표 9〉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현금통화추이

	8. 13~8. 31	9월	10.6
현금통화 증가(억원)	12,990	37,890	-24,740
자기앞수표 교환 (서울, 일평균, 억원)	25,472	28,249	34,953

은 현금선호 등 영향으로 8월중 다소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다. 證券市場

〈표 10〉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증권시장 동향

	8.12	8.14	최저(8.31)	최고(8.19)	10.6	8.12 대비
주가지수 (8.12 대비)	725.94	666.67 (-59.27)	664.88 (-61.06)	737.97 (12.03)	716.90 (-9.04)	-9.4
거래량 (만주)	1,470	2,120	2,197	5,046	2,270	800
예탁금 (억원)	24,416	24,530	27,184	27,932	27,163	2,747

주식시장은 실명제 실시 초기 이틀간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조기에 안정을 되찾아 현재는 실명제 실시전의 거래량 및 주가지수수준에서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회사채시장은 은행·유통시장 모두 한때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에는 실명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

〈표 11〉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채권시장 동향

	8월	9월	증가율
채권거래대금 (억원)	64,719	88,343	36.5%
회사채 (억원)	33,904	54,164	59.7%

라. 外換市場

외환시장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달러 환율은 8월 12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표 1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환율추이

	8. 12	8. 13	9. 13	10. 6
기준환율(원/US\$)	809.10	809.90	807.50	813.10

마. 金融圈別 受信 動向

은행·신탁·단자 등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신은 은행 등의 자금인출로 수신이 적감하였으나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 금융권별 수신동향

	'93. 8월	8.13~8.31	9월	10.1~10.6
은행수신	19,132	17,108	26,319	-7,521
신탁	15,442	10,524	19,703	879
CD	-2,794	-3,386	-2,286	-2,596
투자신탁	-12,683	-10,099	-11,075	2,855
단자	1,679	4,168	13,991	3,724
신용금고	-699	1,366	2,762	312

바. 私債市場

실명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시장은 私債市場이다. 실명제의 영향을 받아 사채시장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고 점차 시장이 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장 침체와 거래의 곤란으로 전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중개업자가 있고 실명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방법을 모색하면서 시장에 잔류하고자 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다.

〈표 14〉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私債金利 동향

	8.12	8.31	9.15	9.28	10.7
사채금리(C급, %)	20.4	20.4	36.0	24.0	24.0

자료 : 제2금융권 탐문자료 평균치

사. 不動産 및 實物市場

부동산 및 실물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거래규제 방침으로 유동자금의 유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주택 및 토지가격은 강력한 투기억제 시책으로 실명제 실시 이후 약세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기타 실물자산의 가격은 세무조사 강화 등 보완대책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 추세에 있다.

〈표 15〉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물가격 동향

	'93.8.12	8.23(D+11)	9.1(D+20)	9.16(D+35)	10.7(D+56)
금값 (도매값 원/돈종)	41,000	42,000	41,500	39,500	40,000
부동산 가격	-	약보합세	보합세	보합세	약보합세

2.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

가. 實名確認 및 轉換現況

〈표 16〉 實名確認 및 轉換實績(93年 10月 12日 現在)

(단위 : 천좌,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단자	신용금고	기타*	합계
실명예금 확인율(%) (계좌)	78.3 (52.8)	83.8 (43.4)	84.4 (81.8)	73.7 (63.0)	94.6 (96.3)	78.7 (70.8)	84.9 (61.8)	81.3 (61.8)
가명예금액 (계좌)	8,524 (540.5)	15,333 (22.5)	- -	295 (6.0)	3,513 (1.5)	168 (1.6)	509 (58.4)	28,342 (630.5)
· 실명전환액 (계좌)	8,250 (426.2)	14,965 (9.1)	- -	265 (0.7)	3,506 (1.46)	167 (1.1)	459 (41.1)	27,604 (479.7)
· 전환율(%) (계좌)	96.8 (78.8)	97.5 (40.3)	- -	89.9 (12.1)	99.8 (97.6)	99.2 (70.5)	90.1 (70.4)	97.4 (76.1)
· 미전환액 (계좌)	274 (114.3)	376 (13.4)	- -	30 (5.3)	7 (0.04)	1 (0.5)	50 (17.3)	738 (150.8)
차명→ 실명전환액	13,656	3,304	3,246	2,691	2,862	6,776	2,240	34,775

* 기타 : 농·수·축협 상호금융, 종합금융, 증권금융, 인삼조합상호금융, 마
을금고, 신탁, 체신예금, 체신보험, 농·수협공제보험

1) 實名計座의 實名確認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실명계좌를 살펴보면, 실명계좌는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실명확인이 의무화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착실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10월 12일 현재 금액기준으로 81.3%, 계좌기준으로 61.8%의 실명확인율을 보이고 있다. 계좌기준의 실명확인율이 낮은 이유는 소액 가계자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10월 1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경우는 주식거래에 있어 실명확인 전에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기준 실명확인율이 낮으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 假名計座의 實名轉換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은 실명제 실시 중반까지는 다소 미진하였으나, 실명전환의무기한(10월12일)이 임박해지면서 전환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10월 12일 현재 48만 좌, 2조 7천 6백억원이 전환되었다. 이것은 계좌기준으로 76.1%, 금액기준으로 97.4%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액가명계좌의 경우 아직 休眠計座로 정식처리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이자 등 소액이 남아있는 휴면성계좌로서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좌기준의 전환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10월 12일 이후의 未轉換計座는 소액계좌 등 사실상 포기한 계좌이거나 경제적 손실보다는 명예의 손상이나 신분의 노출을 두려워하여 10% 또는 그 이상의 과징금을 물면서 향후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3) 借名計座의 實名轉換

실명제 실시 중반까지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실적은 다소 미미하다가 실명전환의무기한에 임박하여 전환속도가 빨라졌으며 10월 12일 현재 3조 5천억원이 실명전환되었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형식상 실명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전환대상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는 누구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비율의 계산은 불가능하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을 적극적으로 강행하기 위하여는 모든 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실지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차명인지 실명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이 최종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그 여부를 밝혀 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금융실명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려는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규모를 가지고 금융실명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名義貸與人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것이다.

4) 總 轉換規模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 규모는 무기명·가명계좌에서 전환된 것과 차명계좌에서 전환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10월 12일 현재 약 6조 2천억원이 전환되었다.

5) 計座當 平均 實名 轉換金額

(단위 : 백만원)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단자	금고	합계
가명 → 실명전환	1.9	164.4	-	37.9	240.1	15.2	5.8
(미전환)	0.2	28.1	-	0.6	17.5	0.2	0.5
차명 → 실명전환	8.2	16.3	4.2	18.2	204.4	10.7	8.4

계좌당 평균 실명전환금액을 보면 단자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계좌당 평균규모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제2금융권에 큰 규모의 자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증권, 단자의 경우에는 실명전환 계좌의 평균규모가 억대에 달하고 있다. 가명계좌의 경우 실명전환된 계좌의 평균금액이 실명전환되지 아니한 계좌의 평균금액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증권과 투신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져 이들 금융권의 미전환 가명계좌는 사실상 거래가 정지되어 실명전환이 포기된 휴면성 계좌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권의 경우 차명에서 실명전환한 계좌의 평균금액이 가명에서 실명전환한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차명예금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자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차명에서 실명전환한 계좌의 평균금액은 8백만원이나 가명에서 실명전환한 계좌의 평균금액은 2백만원으로 나타나 큰 금액의 가명자금은 별로 없고, 차명의 경우에는 세금우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長期産業債券의 경우 후속조치에 따라 10월 1일~10월 30일에 걸쳐 청약은 받아 모두 332건 1,142억원이 청약되었다.

나.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 實績에 대한 評價

실명전환의무기간중의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 실적은 일단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실명제의 초기단계 기반구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8월 13일 이후 모든 실명거래는 실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명거래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차명거래 관행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면 차명계좌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부 미전환된 가명계좌가 있으나 이는 과징금징수 등 제반 제재조치의 효과와 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서서히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신규계좌는 실명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전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가명예금의 비중은 극히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실명전환 의무기간 동안의 실명전환은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의 실명화에 있

어서 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向後 展望

가. 實物經濟에 미치는 影響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당분간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단, 금융거래가 실명화되어 금융저축의 익명성이 사라짐에 따라 저축의욕이 저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소비성향의 증가는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통화공급의 확대는 일정시점이 지난 후 退場貨幣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물가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비용상승, 실물자산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기적으로 투자축소, 기업활동 의욕저하에 의한 생산능력저하로 물가상승압력이 증폭될 수도 있다.

물가상승의 가능성 외에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상승, 투자재원 축소에 의한 기업경영비용 상승 및 설비투자위축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실명제 여파로 파생된 소비지출은 주로 사치성 소비로 흐를 것이고 따라서 산업생산의 증대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는 적절한 정부의 사전방지대책이 마련될 경우 크게 축소될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어 근검정신 및 근로의욕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전문경영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기술축적 노력이 강화되면서 공정거래 기반의 강화, 음성소득 및 지하경제의 축소, 기업의 準租稅 감소 등에

기반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실명제 실시에 따라 수입소비는 위축될 것이지만 수출은 큰 영향없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의 경우 제도적으로 무역금융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압박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실시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 적극적으로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오히려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나. 企業經營環境의 變化

실명제 실시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을 극복하고 실명제가 정착되면 금융관행 뿐 아니라 정치문화, 기업문화, 상거래관행 등 경제운용의 방식과 환경이 상당히 변화할 것이다. 그 중에서 기업활동과 소유구조 그리고 유통업계의 변화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실명거래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화가 가속화되어 비자금의 조성은 한결 어렵게 될 것이다. 실명제 실시로 기업주가 가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자금관리가 건전화된다. 비자금의 조성이 곤란해짐에 따라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도 봉쇄되고 정치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도 축소될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면서 공정한 경쟁풍토가 정착될 것이다.

그동안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에 기반하여 성장해온 기업들은 이제 공정한 경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혜를 받기 위한 로비나 부동산투기, 재테크 등이 아닌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기술혁신 등 기업본연의 창조적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쟁환경은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면서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한층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촉진될 것이다.

실명제의 실시는 이와 같이 기업경영환경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 소유분산을 가져오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식의 상당 부분을 假·借名으로 분산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실명거래가 의무화됨으로써 가명계좌의 정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차명계좌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被借名人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지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주식분산도 곤란하게 될 것이다.

위장지분의 처분을 통한 소유분산과 함께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곤란해지면서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그동안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금융지원에 의존하여 생존해온 계열기업은 자금수급의 측면에서 독립경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공정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경쟁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자금유출의 통로가 봉쇄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자금, 과도한 점대비·기밀비 등은 각종 규제가 낳은 산물인 만큼 금융자율화와 함께 행정규제완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공정한 경쟁풍토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유통업계의 경우도 실명제 실시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동안 영세유통업체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통한 架空買入과 賣出漏落을 부가가치세 회피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실명제 실시에 따라 탈세를 위한 이러한 행태가 축소될 것이고 이것은 유통시장개방과 함께 유통시장의 근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영수증 주고받기를 정착시키고 신용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할 때이다.

다. 金融慣行의 變化

금융실명제는 무엇보다도 금융거래관행과 금융시장구조를 크게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제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고 금융자율화가 본격화되면 금융부문의 변화는 더욱 현실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대부분의 금리가 규제된 상황에서 예금유치경쟁을 해왔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으로 많은 가·차명계좌가 양산된 것도 사실이다. 실명제 실시로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의 가·차명계좌 알선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사라짐에 따라 다소의 금융저축이 금융권을 이탈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시대에는 금융저축의 금융권 이탈방지를 위해 預金誘致戰略이 다변화하면서 고객의 기호에 맞는 신저축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의 개발로 금융기관의 상품이 다양해지고 건전 경영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은행은 고유의 貸出審査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축동원에만 매달려왔다. 대출심사기능이 취약한 은행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담보대출을 관행으로 삼아왔으며 저축동원을 위해 소위 꺾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하에서 대출커미션 등 금융부조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정부의 여신규제가 강력하여 대출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는 점에 원인이 있지만, 은행도 정부의 규제와 보호하에 지나치게 안일한 경영을 해왔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이제 예금유치경쟁을 위한 편법금융거래 및 꺾기, 대출커미션 등 금융부조리는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개방과 함께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가 본격화되면 금융기관들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출심사능력을 제고하여 기대수익률

이 높은 부문에 자금을 배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경쟁체제는 고객유치를 위한 문화행사, 단골에 대한 세무상담 등 은행의 각종 서비스를 강화시킬 것이고 그 결과 은행경영에서 Private Banking Service 체제가 확대될 것이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는 신용카드와 이체제도 활용이 확대되어 금융기관 이용이 생활화될 것이다.

한편 제2금융권은 사채의존도가 높아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지만 사채시장의 양성화된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유입된다면 단자사 및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9월부터 보험, 리스, 신용금고에도 적용됨에 따라 활발한 합병 및 전환도 추진되어 금융기관 구조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시장의 경우 실명거래의 정착으로 가·차명 계좌를 통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축소될 것이다. 이것은 증시의 투기요인이 그만큼 감소하고 건전한 투자풍토가 정착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차명·가명에 의한 1인 다수청약 또는 1인 다수계좌 이용이 불가능해져 공모주청약, 신용융자 등의 경우에 소액투자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회사채 인수시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이 완화됨으로써 기업자금조달 코스트가 인하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채자금 등 지하음성자금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면 주식·채권 거래가 활성화되어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토양을 일신하는 일종의 경제혁명이다. 낡은 사고와 행태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것은 곤란하며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고 사인(Sign)문화를 보급하는 것은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지나친 현금 선호경향을 억제하고 가계수표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V.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向後 金融政策 方向

1. 問題의 提起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라는 新경제 5個年計劃의 금융개혁과 맞물려 금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비실명 거래를 허용해온 결과 불건전한 금융거래가 만연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금융의 자율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산업구조의 개선,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등 금융개혁 추진의 효과를 정책의도와는 달리 격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제 금융실명제 실시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금융개혁 추진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던 금융거래관행을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개인·기업 등 민간부문의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가명, 차명 등을 이용한 비합법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는 각종 금융거래가 대폭 위축될 것이며 또한 그동안 무기명으로 거래되어온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 채권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금융상품의 성격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의 자산운용방식의 변화는 금융기관·금융시장·금융상품

등 금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시장간·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금융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경색이 나타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자금증개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 또한 각 금융기관 및 시장별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에 차이가 나타나 규제차이가 일어난다면 급격한 자금이동·편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금융자산 운용방식의 변화와 금융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금융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금리자유화의 추진,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등 주요과제들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 방향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향후 금융정책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通貨信用政策의 方向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현금수요의 증대는 금융기관을 통한 파생 통화창조의 여지를 감소시켜 통화승수를 낮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이 일부 퇴장하고 금융거래가 위축되면 유통속도가 감소하여 실물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현행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우선 현재의 목표 통화증가율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서도 通貨乘數下落에 따른 총통화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원통화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支給準備率을 인하하여 통화승수를 높혀 줄 필요가 있다.

본원통화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通貨安定證券의 現金償還을 통해 유동성의 공급을 증대하는 방안과 선별적 방안으로서 중소기업 어음 재할인지원을 통해 본원통화공급을 증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을 늘리게 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방안 중 두번째 방안은 현재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들이 실명제 실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정치·사회적인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정책방안은 정책금융 및 선별적 금융지원의 축소라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상치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가지는 사회적·심리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支準率 引下와 通貨債 還收를 통한 本源通貨供給의 증가는 실명제에 타격을 받는 부문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정치·사회적인 부담은 있으나 그 효과가 중립적이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또한 앞으로 실명제가 정착됨에 따라 通貨縮小가 요구될 때, 緊縮的 通貨管理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현금통화 수요의 증가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한 양의 본원통화를 공급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신속적 통화공급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는 총통화의 유통속도에 큰 변화가 없고 따라서 현재의 총통화공급증가율이 적정하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금수요의 증가 외에도 금융거래질서가 재확립될 때까지 각종 금융거래가 대폭 위축됨에 따라 통화의 유통속도 자체가 감소하고, 각 금융자산간(예컨대, M2·M3간)에 자금이 이동하는 등, 장·단기적인 통화지표의 교란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각 통화지표의 유통속도 변

화, 각 금융자산간의 자금이동, 각 지표의 통화성(moneyiness)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통화지표를 재정립하고 적절한 보조지표를 선정하여 중심통화지표는 물론 보조지표의 동향에 따라 통화를 공급하는 신축적 통화관리방식이 요청된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통화당국이 추구해야 할 경제변수도 통화량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리와 환율을 중요시하는 通貨信用政策의 정착이 필요하다. 금리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중자금사정을 반영하게 되는 균형금리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정책수단이 동원될 때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대외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움직임을 고려한 개방경제형 통화관리정책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금융규제의 완화,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른 금융혁신 등에 의해 점차 통화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수요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지표 및 환율지표의 유용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에 금리와 환율이 중요시되어 1992년에 중심통화지표인 M2증가율이 목표치인 2.5 ~ 6.5%에 못 미치는 2.1%에 그쳤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금리와 환율이 중요시되면서 중심통화지표인 M3의 증가율이 1992년에 8.7%를 보여 목표치인 3.5 ~ 5.5%를 크게 상회한 바 있다.

결국 향후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으로는 우선 새로운 중심통화지표 및 보조통화지표의 도입과 함께 간접적 통화관리 방식이 요구되며, 금리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 및 환율 등 가격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한 개방경제형 통화신용정책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金利自由化의 推進

정부는 1991년 8월에 「金利자유화 4단계 계획」을 발표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金利자유화 방안을 제시하였다.金利자유화의 기본방향은 먼저 장기·거액 상품의金利를 자유화하고 점진적으로 단기·소액 상품의金利를 자유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거액·장기 금융상품 및 시장성 금융상품의金利를 자유화하는 제1단계 조치는 1991년 11월에 시행되었다. 제2단계 金利自由化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與信金利와 長期受信金利·會社債 金利뿐 아니라 당초 3·4단계에 예정된 금융채·통화채·국공채의 발행金利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연내에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제2단계金利자유화는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하여 금융시장동향 등 제반경제여건을 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金利자유화가金利의 가격기능을 제고하여 금융실명제 이후 약화된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자금흐름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金利規制가 계속될 경우, 각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金利규제를 회피하는 또다른 불건전한 거래관행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金利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이 단기·부동화되어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각 금융기관은 신상품을 도입하여 수신기반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金利자유화는 실명제로 인해 퇴장된 자금을 흡수하여 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金利자유화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短期受信金利의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金利자유화가 실시되면, 각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대출심사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이 자신의 수익성을 제

고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기관의 건전한 금융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리상승이 우려되나,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화관리를 신중적으로 하여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큰 폭의 금리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中小企業金融의 活性化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사금융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중소기업의 유동성 보전을 위하여 긴급 금융·세계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緊急金融支援과 통화의 탄력적 운용은 현재 중소기업의 連鎖不渡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자금수요가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私金融을 이용하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도나 담보의 부족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실질적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효율적 정보분석으로 신용대출을 하는 등 금융제도를 보완해주던 사채시장의 순기능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를 우선 자유화함으로써 자금의 가용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지도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능 제고와 함께 신용에 의한 대출제도를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에 향후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중소기업의 장기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금융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여신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금공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자금의 사외유출 축소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금융기관들은 경영지도·정보제공 등 기업들과 보다 밀접한 연계관계를 구축하고 신용평가 기술을 제고하여 신용대출제도의 정착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자율화, 특히 금리자유화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5. 資本市場의 活性化

주식시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예상보다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 불안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시장은 오히려 금융실명제 이후 가명 및 차명 방법을 통한 대형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수 투자가에 의한 가격조작이 어려워지는 등 건실한 투자관행이 확립되어 일반 소규모 투자가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된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대하는 호

순환이 전개되면 경제성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가명 및 차명의 대형 투자자들이 자금을 일시에 인출할 경우 증시의 일시적 침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권시장은 채권거래의 匿名性이라는 이점이 상실됨에 따라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된다. 정부는 채권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거액 RP제도를 개선하고, 가장 큰 채권수요기관인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였으나, 금리가 자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은행신탁·투신·증권·보험 등 수탁고 증대자금으로 채권매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이들 기관의 자금운용에 제한을 줄 뿐 구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향후 채권시장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금리의 자유화, 기관투자자의 육성, 채권관련 신상품의 개발, 시장구조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금리자유화가 추진됨으로써 회사채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관련 경쟁 투자자산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신용도·기간구조 등에 따른 채권수요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채권의 중요 수요처는 기관투자자들이나, 이들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은행신탁·투신·보험 등만 아니라 연·기금, 증안기금 등의 채권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신금융상품의 개발과 채권펀드 운용기관의 다양화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채권시장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기반 확충과 함께 채권시장에서 투명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거래제도의 정비와 정보공시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VI.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向後 租稅政策의 方向

1. 問題의 提起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와 新경제 5個年計劃의 수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와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금융거래관행을 법으로 강제·유도하는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新경제 5個年計劃 세제개혁부문의 주요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소득세 기능의 강화는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기능이 미약한 것은 아직까지 포괄적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자산 소득 등은 분리과세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19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소득세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즉,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수단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명제 실시로 각종 세원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의 세원이 실명제 실시 전보다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

에서 구축된 현행 세제는 실명제 실시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실명제 실시는 일종의 금융부문과 조세분야가 혼합된 개혁이다. 이와 같이 인식할 때 중요한 것은 실명제 실시에 따라 원점(zero-base)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서 장기적 세제개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제개혁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새로운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잦은 세제개혁을 해왔고 이로부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앞으로는 세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초하여 신중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세제개혁을 위한 출발점은 실명제 실시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세부담을 소득종류별로, 그리고 자산종류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소득종류별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법인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은 각종 소득종류별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야 하고 자산종류별로는 금융소득, 부동산자산, 기타 실물자산과 같은 자산별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세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즉, 소득종류별로 그리고 자산종류별로 실명제 실시에 따라 노출되는 세원의 크기를 관찰하여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간편성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세수확보가 보장되는 적절한 조세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한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각종 과세자료의 양성화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첫째,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장·단기 세제개편 방안을 강구해 보고 둘째, 실명제의 조기 정착과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행정상의 보완조치를 생각해 보며 셋째, 1996년부터 시행될 이자·배당 종합과세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課稅資料 陽性化에 따른 稅制改編 方案

실명제 실시에 따라 과세자료가 어느 정도 양성화될 것인지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1993년 稅收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개편의 방향 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실명제의 실시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어느 정도 제고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실명제가 실시된다고 하여 과세자료가 100%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면 금융자료나 과세자료를 발생시키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명제의 실시로 과세자료가 어느 정도 양성화될 것인지는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제도상의 보완과 세무행정상의 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과세자료 양성화 비율이 높아진 현실을 전제로 세계의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1993년 세계개편안은 이러한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를 촉진하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득세율 1~3%p 인하, 법인세율 2%p 인하와 배당소득공제제도의 확대, 그리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p 인하와 누진단계의 축소 등은 실명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한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에 따라 예상되는 세부담의 급

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단기적 세제개편과 장기적인 세제개편의 방향을 각 세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이 외국과 비교하여 높다는 지적이 많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50%)은 외형적으로 보아 미국의 최고세율(31%)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소득세 이외에 주 소득세가 연방소득세의 25% 내외의 비율로 부과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총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0%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클린턴 세제개혁안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누진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표 17> 綜合所得稅率의 國際比較

(단위 : %)

한 국	미 국	영 국	서 독	프 랑 스	일 본	대 만
최저 5	3단계	2단계	최저 8.4	최저 5.0	최저 10	최저 6
최고 50	15, 28, 31	25, 40	최고53.0	최고56.8	최고 50	최고 40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50%는 미국, 대만, 영국 등의 최고세율인 40%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감이 있으나, 소득세 면세점이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높은 면세점으로 인하여 199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6%, 사업소득자의 31.4%만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정도이다 (<표 18> 참조).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율 인하쪽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데, 정부는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1~3%p 이상의 소득세율 인하는 곤

〈표 18〉 勤勞所得者 免稅點의 國際比較(所得稅 免稅點/4人家族 平均所得)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26.9	27.7	21.0	17.5	21.1	40.7

주: 국민소득 기준연도는 한국은 1991년, 일본은 1990년, 기타는 1989년임.

란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까지 적자로 편성할 경우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의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적자재정의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명제의 실시로 과세자료 양성화면에서 영향을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이나 기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나 기타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획득자는 실명제가 실시되어도 과세자료를 더이상 양성화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만 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과세자료가 양성화된다. 이때 사업소득자의 납부세액이 50% 가량 증가할 경우 소득세의 전체세수는 10% 가량 증가할 것이다. 1991년 소득세 징수총액 6조 4,594억원 중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1조 3,465억원으로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5%p(=최고세율 50%×10% 인하율) 정도 인하하여 45%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율을 1~5%p 인하한다고 하여 과연 사업소득자들이 자신들의 납부세액이 50%나 증가되도록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킬 것인지는 의문이다.

결국,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실명제실시전 대비 20~30%를 상한선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번에 발표된 1993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예산의 경우 43조

2,500억원으로서 작년보다 13.7% 증가하였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이 양여금을 포함하면 45조 8,755억원에 달하여 작년보다 1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세수확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의 확보는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의 경우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조 4천억원 정도 稅收未達이 예상될 정도로 세수확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명제 실시에 따라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어느 정도일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단행할 경우 결국 그동안의 균형예산의 기초에서 탈피하여 적자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적자재정의 운용은 앞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결국 적자재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적어도 과세자료 양성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1994년 이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검토할 때는 장기적인 세제개편작업과도 연계하여 최적의 소득세율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즉, 현행 소득세율체계는 6개의 과세계급과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도하여야 하고 아울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그 유효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상과 같이 사업소득자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면세점 인상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소득세 과세자 비중을 높이고 하위 소득계급에 대한 소득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것, 그리고 최고 소득세율 계급의 철폐를 통하여 소득세 누진도를 완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간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法人稅制의 改編方向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등의 편법이 크게 줄어들 것이므로 과세포착이 제고되고,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로 세율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율의 인하문제를 장·단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한계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여 18%와 32%로 조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실명제 실시에 의해 세부담이 증대하게 될 기업들의 실명제 정착을 위한 협조를 유도하기에는 이번 개편에서의 법인세율 인하폭이 너무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자료가 대량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그동안 경영관행상 차·가명으로 운영되던 자금들에 대한 추가 부담분만큼 세부담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으로 실명제 실시에 따라 비밀거래 등이 척결되면 그만큼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부담이 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경영풍토의 개선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법인세율의 인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을 접대비 및 기부금으로 지출해 온 점을 감안하여, 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의 접대비 및 기부금의 한도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면 접대비 인정한도의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경쟁대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하여 여전히 세율이 높은 것이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되는데 <표 19>에서 보듯이 주요국가들에 비하여 우리의 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표 19〉 主要國의 法人稅率

(단위 : %)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대 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7.5	15 25 34	33	36 (50)	0 15 25	35	30

주 : 독일의 경우 36%는 배당분, 50%는 유보분임.

법인세의 부담수준이 과중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법인세 자체 세율뿐 아니라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대만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지만 그러한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없어 기업주가 자신의 개인소득세에 추가하여 25% 법인세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래 1/3 gross-up 제도에서 이번에 법인세의 낮은 세율(18%) 기준으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18%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세는 전혀 기업주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 않으며, 32%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18% 정도의 세율만 추가부담이 된다. 따라서, 세계개편(안)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대만 등의 경쟁국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실명제 실시에 따라 크게 변화될 경제환경의 변화추이를 보아가며 세계전반에 걸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목간 세율조정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자산소득·부동산소득 등 소득유형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개인소득세 체계와 법인소득세체계 사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세율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은 세계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기구의 왜곡현상에서 파생된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성장추진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 배분해 주기 위하여 남용된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의한 감면조항들은

법인세제의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과세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각종 비과세·감면조항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법인세의 세원을 확충하는 작업이 장기적인 세율조정작업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유화 등 시장기구의 자율조정기능을 배양할 수 있는 세제 외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기업경영풍토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세제의 시장중립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 相續·贈與稅制의 改編方向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1980년대 후반에는 평균 실효세율이 45%(방위세를 포함하면 54%)이었으나, 1990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인해 1991년 평균 실효세율은 44.2%로 낮아졌다. 증여세 평균 실효세율은 1989년에 49%(방위세를 포함하면 58.7%)로 계속해서 상승하였으나, 1990년에는 39%(방위세를 포함하면 46.7%)로 하락하였고 1991년에는 37.5%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졌다.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의 구성은 부동산이 78.4%(토지: 65.3%, 건물: 13.1%), 금융자산이 16.3%(유가증권: 13.2%, 통화예금: 2.8%), 기타자산이 5.3%로 나타나고 있고, 증여세 과세대상자산의 구성비율은 부동산이 84.6%(토지: 69.7%, 건물: 14.9%), 금융자산이 13.8%(유가증권: 11.6%, 통화예금: 2.2%), 기타자산이 1.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상속재산의 구성은 부동산이 72.3%, 금융자산이 22.2%이며, 증여재산의 구성은 부동산이 73.6%, 금융자산이 25.2%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이제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명 및 차명에 의한 금융자산의 세습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속·증여재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상속자산의 회피가 많았을 때를 고려하여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상속 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증여세의 보완방향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체계 및 공제범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稅制改編(案)을 통해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 포인트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도 획기적으로 인상하였다(상속세 기초공제액 : 1억원, 결혼생활 30년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 4억원, 결혼생활 20년의 배우자 증여공제액 : 약 1억원(9천만원)). 이번의 稅制改編(案) 가운데 상속·증여세 부분은 너무 고소득층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산층의 재산 축적 현황과 상속·증여자료 중 금융자료의 양성화가 상당수준 기대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체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遺産稅制를 遺産取得稅制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은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해 주는 방안과 영국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배우자 상속재산 전액에 대하여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로 배우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엄격해짐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배우자간의 상속·증여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과세형은 유산과세형보다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응능과세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유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유산과세형에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은 면제되어야 한다. 특히 취득과세형의 가장 발

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承繼稅(accessions tax)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 통합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생 누적과세하는 제도로써 수평적·수직적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과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로 상속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자산과 부동산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금융자산은 시장가액에 의해서 평가되나 토지는 공시지가(시장가액의 80% 수준)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액의 70~

〈표 20〉 主要國의 相續稅制度 比較

	상속세율 (%)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최저 (이하)	최고 (초과)	과세 계급		
한국 (유산)	10 5천만원	50 10억원	5	1억원 자녀: 2천만원×자녀수	1억원 + 1천만원×결혼연수
일본 (취득)	10 7백만엔	70 10억엔	13	4,800만엔 + 950만엔×법정상속인수	배우자법정상속분과 8백만엔 중 큰 금액
미국 (유산)	18 1만달러	50 250만달러	16	192,800달러 세액공제 (600,000달러 면제)	배우자상속재산 전액면제
영국 (유산)	40 14만파운드 이상			14만파운드 이하 면제	배우자상속재산 전액면제
독일 (취득)	3	35	25	자녀: 9만마르크	25만마르크
프랑스 (취득)	5 5만프랑	40 1120만프랑	7	자녀: 30만프랑	33만 3천프랑

주: 한국은 1993년 세계개편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독일과 프랑스는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름.

독일 I. 배우자 및 자녀: 3~35%, II. 손자 및 부모: 6~50%,

III. 형제 및 자매: 11~65%, IV. 단체 및 기타: 20~70%

프랑스 I. 배우자 및 자녀: 5~40%, II. 형제 및 자매: 35~45%

III. 4촌이내 친족: 55%, IV. 기타: 60%

〈표 21〉 主要國의 贈與稅制度 比較

	상속세율 (%)			비 고
	최저 (이하)	최고 (초과)	과세계급	
한 국	15 5천만원	55 5억원	5	기초공제 : 3천만원 배우자공제 : 3천만원 + 결혼연수 × 300만원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일 본	10 150만엔	70 1억엔	13	기초공제 : 60만엔 20년이상 부부 : 거주용주택증여시 2천만엔 공제 상속개시 3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미 국	상속세와 같음 (통합형)			평생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
영 국	20 (비례) 14만파운드 이상			7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하 되, 3년 이후부터는 경감률(100~20%) 을 적용
독 일				상속세와 같음(통합형)
프 랑 스				상속세와 같음(통합형)

주 : 한국은 1993년 세계개편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75% 수준), 건축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실거래가액의 30~40%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화가 어렵고 물납이 인정되므로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실거래가액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라. 附加價值稅制의 改編方向

그동안 유통시장의 미정비로 인한 무자료거래, 영수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매출누락이 빈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포착률이 낮았다. 이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매출누락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세원이 노출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를 경감해 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며 간접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세액의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렵다. 즉, 실질적으로는 세액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급격히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과세특례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다소 완화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일단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과세특례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되, 과세최저한 범위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방만한 운용이나 남용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3. 稅務行政上의 補完對策

현재 사업소득자에게 주어지는 과세자료 양성화의 유인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소득자에게 세제상의 적절한 과세자료 양성

화의 유인이 주어지는 경우에 사업소득자가 적극 정부의 조치에 협력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액이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세자료 양성화가 지지부진하여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조기 정책과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상의 보완조치 이외에 세무행정상으로도 납세지도를 적극 강화하고 특히 무자료 거래상들의 자료 양성화를 위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무행정당국의 납세지도 노력이 징세강화의 노력으로 비춰져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적인 정보수집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세청의 전산능력이나 예산 및 전산관계 인원은 금융기관의 전체구좌수인 약 1억 8천만개를 처리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전적인 정보수집체제를 강화하고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시 방대한 금융소득자료를 인별·가구별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의 주전산기를 확대하고, 제출서식 및 코드를 표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자료 이외에도 앞으로 각종 과세자료가 양성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전산 종합정보체제 확립에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요구된다.

정부는 긴급명령권의 발동에 의해 불필요한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1993년 8월 31일과 9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실명제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9월 24일 발표된 조치는 금융실명제가 과거집착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라 할 수 있다.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 인출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현 긴급명령권의 조항은 원래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금인출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둘째, 실명제 실시에 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신고할 경우 과거 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배제한다.

셋째, 현재 구좌당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인별로 2억원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한다.

넷째, 임직원이 관리해오던 법인소유의 비실명자금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그 자금을 법인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할 경우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한다.

다섯째,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증여세 이외의 세무조사를 일체 배제한다.

이와 같은 후속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징수당국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여 보다 확실한 실천의지를 국민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긴급명령권에서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이 과거 실명거래법보다 대폭 강화되었는데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반드시 준수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나아가 신뢰성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조항을 앞으로 확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정부결정고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의 이행을 통해 세무행정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동안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남발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세무행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4. 利子·配當所得 綜合課稅 方案

가. 利子·配當所得 課稅 現況

현재 모든 이자소득(거액사채권자 이자소득 제외)과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20%의 세율(주민세 포함시 21.5%)로 원천분리과세되고 있다. 그리고 비실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60%의 높은 세율(주민세포함시 64.5%)로 차등과세하여 왔다. (<표 2> 참조) 그런데, 현행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체제는 수직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한계세율이 20%보다 낮게 적용되는 계층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됨으로써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20%보다 큰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계층의 경우 20%만의 세율로 이자·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됨으로써 세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또한 <표 22>에서 나타나듯이, 고소득층일수록 전체소득에서 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수직적 공정성의 침해정도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3>을 보면 가구소득이나 가구의 소득에 비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불평등도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공정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우대저축 중 5% 저율과세저축의 경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면세점이 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는 한계세율이 0%인데도 불구하고 5% 저율 저축상품으로부터의 이자는 5%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상당히 큰 실정이다. 1991년 근로자의 납세자 비율은 43.1%이며 사업소득자의 납세자 비율은 32.2%이다. 외국의 근로자 과세비율을 보면 일본(1989) 83.0%, 미국(1987) 82.9%, 영국(1987) 93.6%로서 우리와 비교할 때 상당히 과세자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표 22〉 所得階級別 累積所得 比率(1992년, 都市家計年報)

(단위 : 천원)

	가구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1)	(2)
450 미만	301.8	229.2	2.1	0.70	0.92
450-600미만	525.1	434.3	1.6	0.30	0.37
600-750미만	677.4	578.9	1.8	0.27	0.31
750-900미만	823.4	683.5	3.5	0.43	0.51
900-1050미만	972.7	791.2	4.4	0.45	0.56
1050-1200미만	1120.9	862.3	8.1	0.72	0.94
1200-1350미만	1269.3	968.0	9.3	0.73	0.96
1350-1500미만	1420.5	1042.9	11.4	0.80	1.09
1500-1650미만	1569.4	1171.0	11.4	0.73	0.97
1650-1800미만	1720.4	1225.2	15.7	0.91	1.28
1800-1950미만	1869.7	1341.4	21.7	1.16	1.62
1950-2100미만	2020.9	1437.7	25.7	1.27	1.79
2100-2250미만	2169.5	1483.2	30.4	1.40	2.05
2250-2550미만	2388.4	1639.0	36.5	1.53	2.23
2550 이상	3522.8	2035.7	62.0	1.76	3.05

주 : (1)은 가구소득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비율임(%)

(2)는 가구주 근로소득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비율임(%)

〈표 23〉 所得種類別의 지니係數(都市家計年報 所得 10분위 資料 利用)

	가구소득	가구주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1982년	0.3086	0.2824	0.5411
1988년	0.3116	0.2761	0.5652
1992년	0.2999	0.2486	0.5442

주 :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 값을 갖는데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0.5를 넘으면 불평등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시사함.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수직적 공평성의 제고를 위해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실명제 실시에 따라 제도금융권의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나. 利子·配當所得 綜合課稅를 위한 主要 檢討課題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방안은 아직 기본적인 방향만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향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면 현행 종합소득세를 체계하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세부담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종합과세제도 도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자산유형별·소득규모별·금융자산규모별 세부담의 변화를 측정하여 적정한 종합소득세율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제의 실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의 구체적 실시방안과 실시시기를 감안하여 현행 비과세 혹은 저세율 소액가계저축의 축소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 과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綜合所得稅率體系의 調整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함에 따라 증대하게 될 세부담을 적정하게 경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과세계급 및 한계세율을 재검토하고 최고세율(정부안 47%)을 인하하거나 최고명목세율 적용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들을 설정하여 형평성·효율성 그리고 세수확보의 세가지 기준을 기초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분리과세되던 금융소득이 합산되었을 때 변화하게 될 세부담을 소득분포와 금융자산분포를 연결하여 추정 한 뒤 과세계급과 세율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適正 源泉徵收稅率의 設定

일정금액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원천분리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택일하게 할 것인지, 또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완전히 종합과세할 때에도 원천징수율을 현행 20%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재조정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정되는 종합과세 세율체계하에서의 평균세율을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 원천징수세율을 선정하고 그 과급효과를 할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綜合課稅를 위한 適正 一定限度의 設定

현재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의 단계적 종합과세방안은 우선 일정한도 이상만을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일정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정한도의 결정은 원천징수세율의 조정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정한도의 설정과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는 대상의 수가 달라질 것이고 또한 이에 따라 세무행정상의 부담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4) 適正 經過期間의 設定

부분적인 종합과세의 도입 이후 일정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계획인데, 이때 저축유인을 크게 감소

시키지 않고 행정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실시하기 위하여는 고액 이자·배당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몇 단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5) 現行 非課稅 혹은 低稅率 少額家計貯蓄制度의 整備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이자·배당종합과세 실시전에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지원과 저축장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세금우대저축은 금융자산 대비 22.9%, 주식을 제외한 개인보유 금융저축자산의 약 46%를 점유)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저축상품간 수익률 왜곡과 금융기관간의 공정 경쟁기반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1996년까지 이들을 단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저축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6) 利子配當所得의 物價 連動制 導入問題에 대한 檢討

현재 부동산자산의 경우는 양도소득과세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고 있는 반면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어서 자산유형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VII. 金融實名制와 國民經濟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실명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추진경위로부터 시작하여 긴급명령권에 의해 실시된 이번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고찰하였다. 이제 금융실명제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요약해보고, 금융실명제시대라는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국민의 과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건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틀과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경제개혁이다. 즉,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각종 음성적인 자금거래의 소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탈법적 정치자금의 운용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정치·사회적 정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통해 여건이 조성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면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한층 공고히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대해 가지는 금융실명제의 이러한 의의는 금융실명제가 경제운용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의미하며 또한 촉발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가지는 커다란 긍정적 의의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엄청난 것이다. 금융실명거래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정착된 사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최초로 법적 강제에 의한 금융실명거래제를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채시장으로 대표되듯이 비실명거래를 통한 자금흐름은 그동안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비실명거래를 불법화하는 것인 만큼 당분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교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경제동향을 보면 우려할 만한 심각한 사태는 전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국민 모두의 행태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금융실명제시대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이하여 정부당국의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이 혁신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관행의 개선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개인, 기업 등 민간부문의 자산운용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민간부문의 자금운용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상품 등 금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지면 정부의 통화신용정책 방향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화지표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금융실명제 이후 금리자유화 등 각종 금융자유화를 시행하게 되면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써 시장금리의 기능을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세부담을 완화하는 문제뿐 아니라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비실명시대의 각종 탈세를 전제로 구성된 현행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개편에서 중요한 사항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시도되는 잦은 세

제개혁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명제 실시에 따라 변화하게 될 세부담을 소득종류별로 그리고 자산종류별로 비교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간편성의 원칙에 맞는 세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정부당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도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이하여 기업경영의 풍토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운용이 어려워졌고 자율화에 따라 정부의 경제적, 행정적 간섭도 줄어드는 만큼 기업은 본연의 경제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종전과 같이 대외로비에 의한 경쟁에서 벗어나 경영합리화, 품질개선, 가격경쟁 등 건전경영풍토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고객지향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영사고를 체질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혁신도 불가피하다. 그동안 은행은 투자에 대한 제2차적 심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심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축동원에만 매달려 왔다. 이것은 정부의 여신규제가 강력하여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금융기관도 정부의 보호와 규제하에 안일하게 안주해 왔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율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금융기관도 고유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투자자금의 동원뿐 아니라 효율적 투자의 수행을 위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저축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신상품 개발 등 고객유치를 위한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일반국민이 의식과 관행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서구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은 일반국민의 협조가 실명제 성공의 필수조건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선진국의 금융거래가 대부분 신용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지나친 현금 선호 경향은 아직도 후진적인 것이다.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고 사인(Sign)문화를 보급하는 것은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 그리고 지나친 현금 선호 경향을 억제하고 가계 수표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철규 외, 「특집 금융실명제」, 『이코노미스트』, 1993.4.5.
-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주요 외국의 금융실명제 실시현황」, 1990.1.
- 김도형, 「조세정의와 금융실명화」, 『한국조세연구』, 제4권, 1988.
- 김철교, 「금융실명제와 자본차익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1989.
- 남상우, 「금융실명제의 파급영향과 실시논의」, 한국개발연구원, 1990.3.
- 대우경제연구소, 「금융실명제의 파급효과」, 1993.8.
- ,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계의 과제」, 1993.8.
- , 「금융실명제 실시의 증시에 대한 영향」, 1990.1.
- 민주당 정책위원회,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향모색」, 1993.8.24.
- ,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어떻게 하나」, 1993.9.27.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실명제의 예상파급효과 및 성공을 위한 보완대책」, 1993.8.
- , 「금융실명제 도입의 파급영향분석 및 시행방안」, 1990.3.
- 윤건영, 「금융실명제하의 세제발전과 금융시장의 대응」, 대우경제연구소, 1990.4.
- 윤원배 외, 「금융실명제」, 비봉출판사, 1993.
- 이만기, 「금융실명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자료, 1993.3.
- 이만우, 「실명제에 따른 합리적 금융소득과세제도의 모색」, 『한국조세연구』, 제5권, 1989.
- 이철송, 「금융실명제와 관련세제의 개정방향」, 『투자금융』, 1989.9.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금융실명제 알아봅시다」, 1993.8.20.

- 전경련, 「새정부에의 정책제언-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여건조성」, 1992.10.
- , 「금융실명제 및 이전가격세제의 대응과제」, 제150차 세정간담회 송년세미나 자료, 1992.12.
- 최 광, 「금융실명제의 불씨, 반드시 살려야 한다」, 『경제정의』 창간호, 1990.
-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추진방안」, 1993.3.
-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실명거래제 도입실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1990.6.
- 한국조세연구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향후 재정·금융정책 방향」, 1993.9.
- ,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KTI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993.9.

〈정부발표자료〉

-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 및 문답자료」, 1993.8.12.
-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대책」, 1993.8.13.
- , 「금융실명거래문답자료(Ⅱ)」, 1993.8.15.
- ,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 1993.8.20.
- , 「분야별 대책 및 조치내용」, 1993.8.24.
-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경제동향 및 부문별 대책」, 1993.8.28.
- ,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Ⅱ)」, 1993.8.31.
- ,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대책」, 1993.8.31.
- , 「금융실명제 실시현황과 향후대책」, 1993.9.1.
- , 「금융실명제 실시 1개월-현황 분석 및 평가」, 1993.9.9.
- , 「금융실명제 추진상황」, 제6차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 보고자료, 1993.9.22.

- , 「금융실명제 후속조치」, 1993.9.24.
- , 「금융실명자료 통·수보 업무지침」, 1993.9.
- ,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집」, 1993.9.

附錄

- 〈附錄 1〉 外國의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課稅制度
- 〈附錄 2〉 1993年 稅制改編(案) 中 實名制 實施에 따른 稅制補完
- 〈附錄 3〉 金融實名制 實施 主要 日誌
- 〈附錄 4〉 金融實名制 關聯 法令 全文
- 〈附錄 5〉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1993.8.12)
- 〈附錄 6〉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 細部基準(1993.8.20)
- 〈附錄 7〉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 細部基準(Ⅱ)(1993.8.31)
- 〈附錄 8〉 金融實名 關聯資料 通報業務에 관한 指針

〈부록 1〉外國의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課稅制度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금융실명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주요 외국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소득세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의 관행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함께 살펴보자.

1. 美 國

가. 金融實名制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을 파악한 후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 미국에서 언제부터 실명거래가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신용을 증시하는 사회풍토와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직접 서명하는 관행이 실명거래제의 정착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금융실명제는 1970년에 제정된 현금 및 외환거래보고법(일명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에서 법조문에 명문화되었다. 그런데 이 법은 처음부터 금융실명제를 목표로 제정된 것은 아니며 지하경제부문의 돈세탁 등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용질서가 잘 정비되어있고 실명거래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은행비밀법도 실명거래가 불가능한 거액현금거래를 제한하고 거액현금거래에 대한 자금추적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금융기관은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인출시에도 신분을 확인한다. 1936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o.)가 1962년 법률에 의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거래시에도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1976년 개정세법에서 계좌개설시 납세자번호 (Tax ID No. : 개인의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No.) 기재를 의무화하였다.

만약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고객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 제도를 Backup Withholding System 이라고 한다. 한편, 증권거래시 고객이 납세번호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미국증권거래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금융실명제는 거래 현금거래에 대한 자금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지적하였는데, 현금 및 외환거래보고법(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 Act)은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세자번호 등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형태 및 거래금액 등을 재무성 및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의 건당거래가 1만달러를 하회하더라도 하루에 여러 건의 현금거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하루 동안 동일계좌에 1만달러를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동일인이 수일에 걸쳐 행한 현금거래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의심나는 현금거래는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정보는 전산입력되어 필요시 세무조사요원에 의해 세무조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은행원이 보고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는 경우 1천

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1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 5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분산예치하는 예금자에 대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과 5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金融所得課稅制度

미국은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하고 있다. 다만, 예금주가 납세자번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20%를 원천징수한다.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고용주가 보고한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료와 임금내용, 금융기관이 보내온 고객들의 이자지급내용,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용 등을 자료로 신고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15%, 28%, 31%로 되어 있다.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없으며,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수취배당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비과세 금융상품도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액 또는 공익목적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3단계 누진소득세율 15%와 28%, 31%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진성어음과 1년 미만 단기국공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이다.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차익에서만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았을 경우 손실액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처분소득(Capital Gain)에서만 차감하여 과표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개인의 경우 장기자본손실에 대해서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0달러 한도)을 다른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연도 이후로 무기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2. 英 國

가. 金融實名制

영국에서는 수표(Check)문화가 발달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행한다는 관행이 일찍부터 형성되었고, 금융질서의 안정성과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과 관행으로 실명제가 정착되었다. Bills of Exchange(1894)에 금융거래시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Check Act에서는 수표발행자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 불문법 및 관례에서도 금융실명거래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할 때 신규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기존고객의 추천서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장에 대한 조회절차를 밟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또한 모든 수표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은행은 수취인 명의의 수표만 받아주므로 모든 수표이동은 은행계좌를 통해 추적 가능하다. 그리고 주식위탁계좌, 상업어음(CP), 예금증서(CD) 등은 대리인계좌(Nominee A/C)의 개설이 가능하지만 소득세를 신고할 때 대리인은 반드시 실제수혜자(Beneficial Owner)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나. 金融所得課稅制度

영국은 이자소득에 대해 23.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25%, 40%로 2단계 누진구조를 갖고 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임퓨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법인은 배당지급시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예납하고, 개인은 수취배당액과 법인이 지급한 예납법인세액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개인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납 법인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편 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는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영국에도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이 존재한다. 우체국 취급 재정증권(Gilt bought on National Savings Stock Register)이나 10,000파운드까지의 정부발행 국민저축채권 이자 및 국민저축 은행에 예치된 연간 70파운드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5%, 40%의 2단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단, 재정증권 및 적격사채는 비과세한다. 자본손실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자본이득 5,000파운드까지는 기초공제하며, 당해 연도 자본손실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부분을 차감하여 종합과세한다.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다.

3. 獨 逸

가. 金融實名制

독일의 금융실명거래제는 1977년 제정된 조세징수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이 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조세징수법을 대체한 것으로서 실명제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조세징수법 제154조 제2항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법인은 법인등기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예술가의 경우 동일성에 의심이 없는 한 예명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금융거래의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서 은행이 증권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배당금, 채권자의 지급은 물론 유가증권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주식거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실명제의 원칙에 어긋나게 설정된 계좌로부터 인출할 경우 조세징수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할 세무서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되며 관할세무서의 동의없이 인출해 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조세징수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은행은 예탁금이 고액이거나 고객의 금융자산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그 증명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독일은 1992년 부당이득조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3만마르크(약 1천 5백만원)가 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만마르크(약 2천 5백만원)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예금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불문하고 은행책임자는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실명거래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세금포탈방조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기도 한다.

나. 金融所得課稅制度

독일에서 납세자(예금주)는 연말정산 때 금융자산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이자지급과 원천징수내역을 수시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세원관리를 바탕으로 독일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예금이자에의 경우 30%, 채권이자에의 경우 35%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8.4%, 최고 53%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1989년 1월 1일 실시한 이후 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으로 1989년 6월 30일에 폐지한 바 있으나 1993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도 가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배당할 때 배당액의 25%를 자본수익세로 원천징수한 다음 연간 소득정산시 상기 자본수익세 해당분과 배당액의 일정비율 상당액(Tax Credit)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과세액에서 공제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원천징수를 강화 실시함에 따라 소액예금주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세감면 대상폭을 대폭 확대했다. 즉, 금융자산소득을 합쳐 연간소득이 6,100마르크(305만원) 이하인 단독소득세대와 1만 2,200마르크(610만원) 이하인 맞벌이 세대는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자금액이 10마르크 미만이거나 연이율 0.5% 이하인 당좌예금은 예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되고 있으며 정당·노조·직능단체·연금기관·병원 등 법으로 정한 공익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비과세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되고 있다. 단, 유가증권 매매차익의 경우 유가증권 취득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할 때에는 투기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주식 및 외국에서 취득한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배당부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매매차익이며 1년을 기준으로 Capital Gain에서 Capital Loss를 차감하여 과표를 산출하고 이 과표액이 연 1,000마르크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이 매매차익도 소득세신고의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된다.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4. 프 랑 스

가. 金融實名制

프랑스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 및 주소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을 확인하고 있다. 거래자의 신분은 국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수렵허가증 등으로, 주소는 우편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다만, 일부 양도가 능 금융상품은 공식적으로 법령에 의해 익명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나. 金融所得課稅制度

프랑스는 금융자산소득을 기업의 경우 종합과세(법인세 42%)하고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5% ~ 최고 56.8%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천분리과세세율은 일반공사채는 25%, 기타 금융자산의 경우 48%이

다. 이와같이 프랑스에서는 종합소득세율과 원천분리과세세율의 격차가 심해 종합신고납세가 선호되고 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의 50%를 배당세액공제하고 있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신고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연간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매년 공시되는 일정금액(1989년 28만 8,400프랑 : 약 3,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16%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하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지배주식 이외의 비상장주식 등은 비과세한다.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100만프랑 이하는 0.30%, 100만프랑 이상은 0.15%의 세율로 과세한다.

5. 臺 灣

가. 金融實名制

대만에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도 실명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36만대만달러(약 9백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세법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금융거래시 실명을 밝히고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정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은 사금융의 성행으로 아직도 비실명거래가 잔존하고 있다.

나. 金融所得課稅制度

대만은 이자·배당소득 모두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원

천징수세율은 거주자 10%, 비거주자 20%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6% ~ 40%로서 5단계 누진세율이다. 한편 부부의 수입은 합산하여 남편의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부부합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과세 한도와 대상도 존재하는데 36만대만달러 이하(약 9백만원)는 비과세하며 우편예금, 단기채권이자는 25% 원천분리과세한다. 한편 대만은 1973년에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였으나 유가파동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1976년 폐지하였다. 그 후 1980년대 말 국제수지흑자 등으로 주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재도입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로 주가가 폭락하자 비과세한도의 확대 등 과세방침을 완화하였다. 1991년 4월부터 대만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6. 日 本

가. 金融實名制

현재 일본에서는 금융실명거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에서는 1980년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1984년부터 소액비과세 저축자 관리를 위한 Green Card(소액저축 이용자 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공평과세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조세수입의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원래 일본은 1970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리선택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천분리선택 과세제도란 20%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또는 35% 원천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세제인데, 80년 당시에는 이 제도가 부유층 우대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공평

과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한편 분리선택과세되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당시 일본 대장성 추계에 의하면 약 2,000억엔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었다. 또한 종합과세 회피목적의 타인명의, 가공명의, 무명의 등에 의한 비과세제도의 악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그린카드제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그린카드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린카드는 소액비과세저축, 비과세우편저금, 소액비과세공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며 비과세저축의 인별 한도관리를 하기 위한 카드로서 납세자번호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저축자 및 법인에게도 이 카드를 발급하여 세무보고시 이 카드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린카드가 납세자번호증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0년 3월 세법개정안이 중·참의원을 통과한 이후 1980년 4 ~ 7월 중 도시은행의 개인저축은 32.7%가 감소하고 우편저금은 전년동기 대비 44.2% 신장하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저축의 이탈과 우편저금의 급증이 발생한 것은 그린카드제가 8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84년 1월 1일 이전에 예입된 우편저금은 그린카드가 없어도 구법에 따라 계속 비과세 취급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세자금뿐 아니라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대량의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탈하거나 해외로 유출되었다. 그린카드제 실시가 결정된 이후, 1982년부터 활발히 발행된 미국의 제로쿠폰채(만기 20년 이상 장기할인채)를 일본투자가가 집중매입한 것은 이러한 자금의 해외유출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제로쿠폰채는 82년 3월 3일 대장성의 행정지도로 국내판매가 금지되기까지 적어도 20억달러는 팔렸다고 하며 이것은 미국발행 제로쿠폰채의 총 80%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한 그린카드제는 경제활동의 위축, 자금의 해외유출, 부동산·금·귀금속 등에 대한 실물투기, 이에 따른 금융압박 및 사금융의 조장 등을 이유로 1984년 3년간 실시가 연기되었

다. 그리고 결국 1985년 1월에는 폐지되었다.

그린카드는 일종의 납세자번호증으로서 일본에서 최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번호부여제도라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저항감을 유발하였다. 즉, 예금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증대로 저축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다. 1983 ~ 1985년에 개인저축에서 비과세 저축이 점하는 비율은 58 ~ 59%에 달하여 종합과세 전환에 의한 비과세저축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는 개인에게는 세부담 증대를 의미하였다. 또한 1982년 당시 국세수입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7%에 이르러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도입에 의한 세수확보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실물자산으로의 자금이동, 현금수요증대 및 지하경제 확대 등 금융혼란에 대한 우려도 실명제 폐지의 명분이 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세무당국은 대량의 개인별 정보관리, 이자발생건수의 폭주 등에 따른 막대한 사무부담과 비용발생을 우려하였다.

그린카드제 실시 시도가 실패한 후 일본에서는 대장성의 행정지도를 통해 실명거래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소득세법은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주민표의 사본 등으로써 지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존인물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가 강하며 실명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1988년 4월 1일 발효된 1987년의 소득세법개정으로 소액비과세 저축의 범위가 대폭 축소됨과 동시에 이용자의 실명확인이 상당히 엄격해졌다.

주식거래는 대장성의 행정지도와 증권회사의 내부규정등에 의해 사실상 실명거래가 정착되고 있는데 1988년 9월 13일의 대장성 통지문 제1601호는 주식매매의 위탁주문이 가명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문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수탁 규칙 제 19조는 유가증권 매매보고서 및 잔고증명서의 고객에 대한 우송을 의무화하고, 반송될 경우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재확인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고객카드제도 규정 제3조를 통해 증권회사는 고객의 직업, 자산상황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객카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金融所得課稅制度

현재 일본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로 원천분리과세하고 있다. 300만엔 한도내의 65세 이상자·모자가정·신체장애자의 저축 및 500만엔 한도내의 근로자 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1988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소득세법은 소액비과세 저축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일률 원천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동법 부칙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은 종합과세제로의 이행문제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다음 재검토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조만간 이자소득 과세방식에 대한 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한 종목당 연간 10만엔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한 종목당 연간 10만엔 초과, 50만엔 미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는 35%의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한 종목당 50만엔 초과배당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한 주주의 경우 종합과세되는데 이 경우에도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율 20%로 원천징수한다. 한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1,000만엔 미만은 10%, 초과분은 5%를 공제한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989년 4월 1일부터 과세하고 있는데,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이 과세대상이며 공사채와 수익증권은 비과세한다. 신고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데 소득세 20%, 주민세 6%를 징수한다. 원천분리과세는 개인이 주식을 매각한 경우 증권회사가 매각대금의 일정률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완결되는데 주식은 양도가액의 1.0%,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양도가액의 0.5%를 원천징수한다.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차익과세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0.55%의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0.30%로 세율을 인하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거래당사자 본인의 서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명거래관행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실명거래의 법제화는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정착 과정에서 세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도는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 과세공평 등의 필요에 의해 20C 이후 선진국에서 도입·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금융소득의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의무 등이 세법에 규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관행이 종합소득세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금융실명거래의 법제화를 통해 더욱 확고하게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나라들의 경우, 역사상 비실명거래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다. 대만의 경우에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의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도장에 의한 차명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소득세제 또한 금융소득을 분리·비례과세함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폭넓게 시행해 온 세금우대저축제도는 탈세목적의 차명거래를 크게 확산시켰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형금융사고의 빈발, 소액저축제도의 부정이용

등 비실명거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초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침이 결정되고 금융실명거래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수용태세의 미흡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주요외국의 금융실명거래제와 금융소득과세제도〉

	실 명 거 래	이자배당소득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미 국	· 실명거래 · 관행으로 정착	· 종합과세 (3단계 : 15%, 28%, 31%) · 원천징수 없음	· 종합과세 · 증권거래 비과세
영 국	· 실명거래 · 관행형성 법령보완	· 종합과세 (2단계: 25%, 40%) ·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23.25%)	· 종합과세 · 증권거래에 대해 인지세 과세 (0.5%)
독 일	· 실명거래 · 세법으로 의무화 (금융기관)	· 종합과세 (최저 8.4%~최고 53%) · 93.1월 원천징수 부활 (이자 30%, 배당 35%)	· 원칙 비과세, 다만 취득후 6개월 내 양도시 과세 · 증권거래과세 (0.25%)
프랑스	· 실명거래	·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최저 5%~최고 56.8%)와 원천분리과세(일반공사채 25%, 기타 48%) 중 선택 ·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신고분리과세 (16%) · 증권거래과세 (2단계 : 0.15%, 0.3%)
일 본	· 실명거래 미도입 · 행정지도로 실명 거래 유도	· 이자소득은 원천분리과세 (20%) · 배당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원천분리과세(20%), 원천분리과세(35%)와 종합과세(최저 10%~최고 50%)중 선택. 종합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 원천분리(매각액의 1%)와 신고분리(양도차익의 26%) 중 선택 · 증권거래과세
대 만	· 금융 자산소득 종합과세로 실명 거래 제도화 · 사금융의 성행으로 비실명거래 잔존	· 종합과세(최저 6% ~ 최고 40%) · 이자배당 모두 원천징수 (10%)	· 종합과세(89.1월부터 시행하다가 상장주식은 91.4월부터 비과세) · 증권거래과세(0.15%)

〈부록 2〉 1993년 稅制改編(案) 中 實名制 實施에 따른 稅制補完

가. 세율 및 공제액의 조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

1) 소득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액 조정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거래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도 동시에 경감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소득세의 세율을 1~3%p 인하하고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li style="padding-left: 20px;">~ 400만원 : 5% <li style="padding-left: 20px;">400~ 800만원 : 10% <li style="padding-left: 20px;">800~1,600만원 : 20% <li style="padding-left: 20px;">1,600~3,200만원 : 30% <li style="padding-left: 20px;">3,200~6,400만원 : 30% <li style="padding-left: 20px;">6,400만원 초과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li style="padding-left: 20px;">· 기초공제 : 연 6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근로소득공제 : 250~600만원 <li style="padding-left: 40px;">250만원 이하 : 100% <li style="padding-left: 40px;">250만원 초과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체계 조정 <li style="padding-left: 20px;">~ 400만원 : 5% <li style="padding-left: 20px;">400~ 800만원 : 9% <li style="padding-left: 20px;">800~1,600만원 : 18% <li style="padding-left: 20px;">1,600~3,200만원 : 27% <li style="padding-left: 20px;">3,200~6,400만원 : 37% <li style="padding-left: 20px;">6,400만원 초과 :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액 인상 <li style="padding-left: 20px;">· 연 72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연 270~620만원 <li style="padding-left: 40px;">270만원 이하 : 100% <li style="padding-left: 40px;">270만원 초과 : 30%

근로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인상에 따라 면세점 수준도 상향조정되었다. 근로자(4인가족)는 현행 연 550만원에서 연 587만원으로 조정되고, 사업자(4인가족)는 현행 연 210만원에서 연 222만원으로 조정된다.

2) 법인세율의 인하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현행	개정 (안)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20%	- 법인세율을 2%p 인하조정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8%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34%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32%

참고로 외국의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7.5	15 25 34	33	36 (50)	0 15 25	35	30

3) 상속세 및 증여세 누진세율 완화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누진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완화하였다.

현행	개정 (안)
- 상속세 : 10~55% (5단계)	- 10~50% (5단계)
· 2천만원 이하 10%	· 5천만원 이하 10%
· 2천만원~2억원 20%	· 5천만원~2억5천만원 20%
· 2억원~5억원 30%	· 2억5천만원~5억5천만원 30%
· 5억원~10억원 40%	· 5억5천만원~10억원 40%
· 10억원 초과 55%	· 10억원 초과 50%
- 증여세 : 15~60% (5단계)	- 15~55% (5단계)
· 1천만원 이하 15%	· 2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9천만원 25%	· 2천만원~1억5천만원 25%
· 9천만원~2억 5천만원 35%	· 1억5천만원~3억원 35%
· 2억 5천만원~5억원 45%	· 3억원~5억원 45%
· 5억원 초과 60%	· 5억원 초과 55%

4) 상속·증여세 공제액 상향조정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증가될 것으로

현행	개정 (안)
- 상속세 기초공제액 : 6,000만원	- 기초공제액 인상 : 1억원
- 배우자간 상속 증여공제액	- 배우자 공제액 인상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억원+(결혼연수×600만원)	: 1억원+(결혼연수×1,000만원)
· 배우자 증여공제액 : 1,500만원+(결혼연수×100만원)	: 3,000만원+(결혼연수×300만원)
-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액 : 1,500만원	- 직계비속 중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는 3,000만원으로 인상

로 예상되므로 공제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고,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상향조정하였다.

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경감

실명제 시행에 따라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2년 사업 실적분부터 2년간 임시세액 감면 · 대상기업 : 중소기업체 · 세액감면율 : 20~40% * 금년 말로 감면기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계속 시행 · 대상기업 : 중소기업체 · 세액감면율 : 20% · 감면기간 : 적용시한을 두지않고 상시운용 · 감면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법상 여타조세지원적용 배제 * 94.1.1 이후 여타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은 선택 불가

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1)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 신설

실명제 시행에 따라 과세자료 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고,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피, 매출액 은폐소지를 줄임으로서 세정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현행	개정안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체계 · 일반과세자(연간매출액 3,600만원 이상) : 부가가치 (=매출액 -매입액)에 10% 과세 · 과세특례자(연간매출액 3,600만원 미만) : 매출액의 2% 과세 -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간의 세율차이로 세부담격차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한계세액 공제제도> · 경감대상 : 연간 매출액 1억 2,000만원(1과세기간 6000만원)미만의 개인일반과세자 · 경감세액 :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과세특례자로 있을 경우 부담하는 세액과의 차이에 대해 일정률을 경감 · 경감률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경감혜택이 적어지도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체감식으로 경감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다음과 같다.

- 세부담 경감효과(용역업의 경우)

(단위 : 만원, %)

1과세기간		세 액		실효세율		경감효과	
매출액	매입액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세 액	비 율
1,800	1,062	74	36	4.1	2.0	38	51
2,700	1,593	111	66	~	2.4	45	41
3,600	2,124	148	105	~	2.9	43	29
4,800	2,832	197	168	~	3.5	29	15
6,000	3,540	246	246	~	4.1	-	-

2) 부가가치세 면세점 인상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감안하여 면세점을 현실화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연간 매출액 400만원(납부세액 8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 대상인원 : 28만명 (과세특례자의 21%)	- 면세점 상향조정 · 연간매출액 400만원(세액 8만원) → 600만원(세액 12만원) * 대상인원 : 63만명 (과세특례자의 47%)

3)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농·수·축·임산물의 거래양성화를 통해 서비스업종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선하였다.

<참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그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인정 · 대상품목 : 농·수·축·임산물 · 공 제 율 : 농수산물 매입가격의 5/105 단, 주류·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은 3/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 공제율은 3/103 단일율로 통일

농·어민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4) 기업의 매출채권 대손시 부가가치세액 공제제도 신설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서도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기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채권이 대손이 되어 관련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단,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인정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과세사업자의 경우 대리납부한 세액을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실익은 없으면서 불편만 주므로 이를 개선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부터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 면제

7) 신용카드 세액공제대상의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음식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하여 매출금액의 5/1,000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법인 및 연간 매출액 3억 이상의 개인복식 부기의무자는 제외	-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하여 매출금액의 5/1,000를 세액공제 · (좌 동)

신용카드 발행의 확대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영수증 주고받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라. 기업경영여건 및 재무구조 개선

1) 배당세액공제제도 확대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 경영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완전조정해줌으로써 기업투자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34%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1/3 Gross-up 배당금액의 17/99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	- 18%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이중과세 완전조정 배당금액의 9/41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

참고로 Gross-up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이란 주주가 배당받은 금액을 법인세가 없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방법이다.

$$\circ [(\text{배당금} + \text{배당금} \times \frac{\text{법인세율}}{1 - \text{법인세율}}) \times \text{소득세율}] - (\text{배당금} \times \frac{\text{법인세율}}{1 - \text{법인세율}})$$

○ 현행 1/3 Gross-up

$$\frac{\text{법인세율}}{1 - \text{법인세율}} \times \frac{1}{3} = \frac{0.34}{1 - 0.34} \times \frac{1}{3} = \frac{17}{99}$$

2) 초과유보소득 과세완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저해하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자본금기준을 도입하여 자본수익률이 낮은 기업에 초과유보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한다(제조업 자본금 순이익률: 대기업 12.96%, 중소기업 9.18%(평균 12.12%)).

또한 법인세와 초과유보소득세(현행 25%)를 포함한 총세부담이 소득세 최고세율수준을 넘지 않도록 초과유보소득세율을 하향조정하였다.

현행	개정(안)
- 비상장 대법인이 법인세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의 공제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하고 있을 때에는 그 초과유보분에 대해 일반법인세 외에 초과유보 소득세 추가과세 · 공제수준: 배당가능이익의 40% · 세율: 25%	- 공제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조정 · 공제수준: 배당가능 이익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 · 세율: 15%

3) 중간예납기한 조정

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기한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통상적인 법인세 고지·징수기한(30일)에 맞추어 미납부 중간예납세액고지·징수기한을 조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 내	- 중간예납기한을 60일로 연장
- 중간예납 미납부세액은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0일 이내 고지·징수	- 미납부중간예납세액의 고지·징 수기한을 30일로 연장

4)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조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수입금액의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 기초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접대비 한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평균 월접대비 손금산입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 600만원(중소기업은 1,200만원)+ 자본금의 2%+매출액의 0.1% (중소기업은 0.2%)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상향조정 · 기초금액: 1,200만원 → 1,800만 원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과 조세마찰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하였다.

현행	개정(안)
① 상품판매수익의 인식 - 원칙 : 상품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할 때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인식 - 예외 : 선수금을 받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간주	-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의 간주매출제도 폐지
② 할부 연불판매의 경우 수익인식 - 부불금 회수일에 수익인식 <할부> · 정형적 약관, 3회 이상 대금분할 ·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부불기간: 3월 이상 <연불> · 개별적 약관, 3회 이상대금분할 · 인도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부불기간: 2년 이상	- 할부판매로 통합하여 장·단기 할부판매로 구분 { 단기할부 : 부불기간 1년 이내 → 인도일에 인식 장기할부 : 부불기간 1년 초과 → 할부금 회수일 기준
③ 지급이자 비용처리 -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이자지급일) 손비로 처리	- 지급이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발생주의에 의해 기간경과분은 비용으로 인정
④ 퇴직급여충당금 -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	- 출자자인 임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인정
⑤ 건설자금이자계산 - 고정자산에 사용된 것이 확실한 차입금의 이자는 물론 - 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도 취득원가에 가산	-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실한 차입금의 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원가에 계산
⑥ 장기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의 -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장기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는 · 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과 · 이번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외화채권채무평가차손익)을 ·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환기간 동안 손익으로 처리	-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연도 손익」으로 처리
⑦ 고정자산(부동산)에 대한 임의평가제도 - 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로 회계처리 - 임의평가하는 경우엔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34%)	- 고정자산에 대한 임의평가제도 폐지

6) 가산세 완화

현행	개정(안)
<p>① 중과소신고가산세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과소신고 가산세제도는 폐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흡수통합
<p>②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많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율 조정 및 제출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율 조정 미제출 주식액면가액의 1% · 제출의무면제 액면가액 500만원 이하의 공모설립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소유자의 이동상황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상황 제출면제
<p>③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의 5% 상당액과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공고가산세율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4% 중 적은 금액

7) 가지급금규제 강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이자 손금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빌려주고 있을 때에는 ·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 $\text{가지급금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중 적은 금액}$ <p style="margin-left: 40px;">지급이자 × $\frac{\text{가지급금}}{\text{총 차입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가지급금}}{\text{총 차입금}}$

〈부록 3〉 金融實名制 實施 主要 日誌

일 자	내 용
1993. 8. 1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국무회의 개최 (19:00, 청와대) - 대통령 특별담화 (19:30)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발동으로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 (20:00) ※시행령:대통령령 제13957호,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45호 - 국회소집요구 - 재무부장관 지시에 의해 8월 13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 조정 ·금융기관 : 14:00-20:00, 주식시장 : 14:10-16:10 - 부총리·재무부장관 합동기자회견(20:00) - 제1차 『금융실명제실시 중앙대책위원회(위원장:재무부차관)』 개최 - 재무부에 『금융실명제 실시단』 설치 - 금융기관장 회의 (19:30~21:30)
1993. 8. 1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 의회불법유출 방지대책 발표 - 『금융시장 비상대책반 (위원장 : 한은부총재)』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제1차 임시반상회 개최(내무부) - 금융기관 교육요원 교육 - TV 방송교육(KBS 1) 실시 - 신문광고(8. 13~8. 14)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부총리, 재무부장관) ·실명제 지지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다짐(금융단)
1993. 8. 14(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중앙대책위원회 개최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전국토의 93.8%, 건설부)
1993. 8.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 안내센터 상담요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1993. 8. 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국회 개최 - 중소기업지원회의 개최(재무부장관 주재) 및 중소기업지원 방안 발표 - 증권시장 단기 안정화 대책 발표 - 실명제실시 종합홍보대책 발표(공보처)
1993. 8. 1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경제운용종합점검위』 개최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 - 부동산등 실물투기억제, 자금해의유출규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 마련(국세청) - 제2차 임시반상회 개최(내무부)

일 자	내 용
1993. 8. 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중앙대책위원회 개최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안의 국회 재우위 통과(만장일치)
1993. 8. 1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1명 반대 : 김동길의원)
1993. 8. 2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재정경제명령』 국회 승인에 대한 공포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 실명제 실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총리주재, 10개부처 장관 및 국세청장) -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 시달
1993. 8. 2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 안내 신문광고 (중앙 9개 일간지 전면광고 : 실명제 문답풀이)
1993. 8.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경제운용종합점검위 개최(경제기획원 차관 주재)
1993. 8. 2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중앙대책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추가지원대책 발표 - 총리·부총리 주재 『대국민설명회』 개시 (8. 24 - 9.8) (지역주민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시·도 순회)
1993. 8. 2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9명 : 민자 5, 민주 3, 무소속 1)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거래활성화 방안 마련
1993. 8. 2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간이계산지침』 시달
1993. 8. 3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중앙대책위원회 개최 - 재무부장관, 국세청장 합동기자 회견(자금출처조사 기준등) -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Ⅱ)』 발표
1993. 9. 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국회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 개최
1993. 9. 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 조정 및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마련
1993. 9. 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향후대책 발표 - 금융실명제 실시단내 『중소기업 자금애로 상담반』 설치

일 자	내 용
1993. 9. 8(수)	- 세계개편안 협의를 위한 당정협의
1993. 9. 11(토)	- 『금융실명제 실시 1개월 : 현황분석 및 평가』 발표
1993. 9. 14(화)	- 『재외국민의 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Ⅲ)』 시달
1993. 9. 16(목)	- 『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달
1993. 9. 20(월)	-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Ⅳ)』 시달
1993. 9. 22(수)	- 『금융실명자료 통·수보 업무지침』 시달
	- 제6차 중앙대책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자금지원을 위해 긴급운전자금 추가지원
1993. 9. 24(금)	- 제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실명제 후속조치 의결 시행
1993. 9. 28(화)	- 장기산업채권발행 세부방안 시행
1993. 10. 4(화)	- 기시달된 업무지침, 세부지침 등을 종합한 업무편람 배포

〈부록 4〉 金融實名制 關聯 法令 全文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대통령령, 재무부령

긴 급 명 령	대 통 령 령	재 무 부 령
<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p> <p style="text-align: center;">1993. 8. 12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p> <p>제1조【목적】 이 명령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p> <p>(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p> <p>(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p> <p>(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p> <p>(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p> <p style="text-align: center;">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7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명령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중소기업은행 6. 한국주택은행 7. 국민은행 	<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1993. 8. 12 재무부령 제1,945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명령 제2조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긴 급 명 령	대 통 령 령	재 무 부 령
<p>(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차)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p> <p>(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p> <p>(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p> <p>(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p> <p>(하)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p> <p>(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p> <p>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p>	<p>제3조【실지명의】명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p> <p>2. 법인(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 및 납세번호</p> <p>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p> <p>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명칭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p>	

긴급명령	대통령령	재무부령
<p>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p> <p>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안된다.</p> <p>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 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실지명의</p> <p>제4조【고액실명전환자산의 통보】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가 실명으로 전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전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 중 명령 제6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p> <p>2.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그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p> <p>제5조(금융자산가액) 명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p> <p>1. 예금·예탁금·신탁재산 등은 명령시행일 현재의 인출 가능액</p> <p>2. 적금·부금·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은 명령시행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p> <p>3. 보험료·공제료는 명령시행일 현재의 환급가능액</p> <p>4.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은 명령 시행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p>	<p>제3조【실명거래의 확인방법】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족의 증표에 의하거나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영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p> <p>2. 법인의 경우 영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p> <p>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영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p>

긴급명령	대통령령	재무부령
<p>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의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p> <p>2.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p>	<p>5. 채권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p> <p>6. 어음은 매입금액</p> <p>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p> <p>제6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기구】</p> <p>① 재무부장관은 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의 실시 및 종합과세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이하 '실시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실시단은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금융기관 기타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③ 실시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p>	<p>4. 외국인·외국단체의 경우</p> <p>영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여권·신분증</p> <p>제4조【고액실명전환자산의 통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액실명전환자산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제5조【금융자산가액】</p> <p>① 영 제5조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p> <p>1. 동일채권을 수취에 걸쳐 매매한 경우에는 명령시행일까지 이동평균법(당해 금융기관이 총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p> <p>2. 현물로 예탁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유사한 채권의 예탁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p> <p>3.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p> <p>② 영 제5조 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p>

긴급명령	대통령령	재무부령
<p>3. 재무부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p> <p>4.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p> <p>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p> <p>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 <p>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6조【고액현금인출의 통보】</p> <p>① 명령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3개월로 한다.</p> <p>② 명령 제10조 제2항에서 ‘채권 등의 거래가액(양도성에 금융증서의 경우는 액면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금융기관 점포별로 매월 그 거래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p> <p>③ 명령 제1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명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p>

긴 급 명 령	대 통 령 령	재 무 부 령
<p>제5조【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②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로 한다.</p> <p>제6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특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비실명자산으로서 이 명령시행일 현재 당해 금융자산의 가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 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1천 500만원 이하 2.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3. 당해 금융거래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p>제7조【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p> <p>①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일(제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에 다음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p>		

긴 급 명 령	대 통 령 령	재 무 부 령
명령 시행일부터 계산한 기간	징수율	
1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10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20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30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40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0	
5년이 되는 날의 경과후	100분의 60	
<p>②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p>		
<p>③ 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채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를 '과금'으로 본다.</p>		

긴 급 명 령	대 통 령 령	재 무 부 령
<p>제8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p> <p>① 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 당시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저율 분리과세되는 기존 비실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당해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9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p>		

긴 급 명 령	대 통 령 령	재 무 부 령
<p>제10조【고액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통보】 ①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 무기간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계좌별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한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기타 증서 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자산(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보유하고 있는 자와 당해 채권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당해 채권 등의 거래가액(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채권 등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2. 당해 거래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p>제11조【금융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를 원활히 실시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p> <p>제12조【벌칙】 ① 제4조 각항의 규정에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긴 급 명 령	대 통 령 령	재 무 부 령
<p>제13조【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p> <p>② 이 명령의 규정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p> <p>③ 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벌칙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명령 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때에는 그 벌칙 또는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이 명령 시행당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자 및 동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소액주주(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던 자가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기존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명령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명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긴급명령	대통령령	재무부령
<p>제16조【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 확대】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 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후 6월의 범위안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 제1항 및 신기술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게 할 수 있다.</p>		

긴급명령	대통령령	재무부령
<p>부 칙</p> <p>제1조【시행일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포절차】 이 명령과 이 명령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방송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에 의하여 공포할 수 있다.</p> <p>제3조【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변경등】 재무부장관은 이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정지 또는 영업시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부 칙</p> <p>이 영은 명령의 시행일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명령의 시행일시부터 시행한다.</p>

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이 법률은 시행되지 않은 법률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82. 12. 31 법률 제 3607호	1983. 5. 11 대통령령 제 11124호	1983. 6. 13 재무부령 제 1574호
개정 1990.12.31 법률 제 4280호	개정 1989.3.14 대통령령 제 1264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촉진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제3조【금융자산】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말한다.	제3조【차등과세 제외대상 확인방법】 영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한 매입자에 대한 확인은 당해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정금액의 채권매입과 관련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에 의한다. 제4조【여권미발급 재외국민의 실지명의】 영 제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함이 불가능한 경우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차)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카)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출자지분 및 어음과 기타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 원본이상의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중개·할인·발행(상거래에 위반되는 어음의 발행을 제외한다)·상환·환급하거나 그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부상의 명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4조 [차등과세 제외대상]
 법 제3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의무가 없는 금융거래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이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한 매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2.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채권
3.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신전화채권

제5조 [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 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여권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목적의 일반여권(여권에 갈음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받은 자는 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2. 외국인의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거류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나) 가목의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7호의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의 재외국민의 실지명의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로 한다.

제5조 [실지명의의 확인방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이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과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의 등·초본과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주민등록표의 등·초본과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은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학교장이 확인한 신분증명서 또는 확인서 (다) 영 제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은 그 여권.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등록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등본)
2. 외국인의 경우 (가) 영 제5조제2호 가목의 외국인은 거류신고증 (나) 영 제5조제2호 나목의 외국인은 여권 (다) 영 제5조제2호 다목의

제3조【실명거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매입이 의무로 되어 있는 국채와 공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실명거래촉진 조치】

①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의 실시를 위하여 전산화 등 행정준비작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제한적으로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다음과 같이 높게 차등과세한다.

1. 198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정한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198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정한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

③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3. 법인(국제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은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나) 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납세번호중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중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함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6조【실명거래의 실시를 위한 행정준비】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거래의 실시를 위한 행정준비작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의 시행준비를 위한 실명거래실시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신분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영 제5조제3호 가목의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 사본

(나) 영 제5조제3호 나목의 법인은 납세번호증 또는 그 사본

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영 제5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그 사본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 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1990. 12. 31 본항개정)

제5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의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목의 기관 상호에 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2. 재무부장관 · 한국은행 · 은행감독원장 또는 증권감독원장의 업무상 필요한 감독 · 검사에 관하여 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소관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

② 실명거래실시준비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금융기관 기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실명거래실시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1989. 3. 14 신설)

제7조【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 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란 합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 · 동법 제146조의 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제5조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를 알게된 자에게 그 목적외의 용도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벌칙】 ①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국가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제9조【기존무기명 실명자

산등에 관한 특례】 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 시행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자가 그 금융자산을 상환 또는 환급받거나 그 금융자산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 시행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수입된 정기예금·금전신탁 및 채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자가 그 만기일에 상환받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계속하여 예입하거나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실명 금융자산에 관한 세무조사특례등】 ① 이 법 시행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이 법 시행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의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이 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당해 금융자산의 과세 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1982년 6월 30일까지 그 출자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 ① 제3조의 규정 시행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제3조의 규정 시행후 6월까지 이를 실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 시행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거래자(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자를 포함한다)가 제3조의 규정 시행후 6월을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실명으로 변경하거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때에는 그 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 시행전에 수입된 정기예금 금전신탁 및 채권으로서 제3조의 규정 시행후 6월을 경과한 날 이후에 만기 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과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④ 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납부 채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를 "과징금"으로 본다.
- ⑥ 금융자산의 원본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p>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의 실시는 전산화등 행정준비상황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률과의 관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2. 예금·적금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경우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p>③(실명변경에 따른 공개법인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인세법에 의한 공개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실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공개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계속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④(차등과세에 관한 적용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8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이자소득분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1989. 3. 14)</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3.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61. 7. 29

법률 제668호

개정 1971. 1. 13 법률 제2278호

제1조【목적】 본법은 금융기관에 예입 또는 기탁된 예금·적금 등에 관한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저축의 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본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은행법과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무진회사, 신탁회사 및 우편관서를 말한다. ② 본 법에서 예금·적금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수입한 예금,저금,적금 및 운용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을 말한다.

제3조【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우편관서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하 같다)는 예금·적금 등의 명의인(금전신탁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예금·적금 등에 관한 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일 금융기관내부, 금융기관상호간 또는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검사에 대한 정보제공인 경우 또는 제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금융기관내부, 금융기관상호간 또는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지득한 자는 그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정보제공의 요구금지】 ①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부한 체납자 및 그 체납액을 기재한 서면을 체납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제시하여 그 체납자의 예금·적금 등의 전액이 체납상당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전액이 체납상당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전액)를 질문할 경우 또는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들과 재산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수수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예금·적금 등의 전액을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서면으로 조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적금 등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적금 등에 관한 비밀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5조【부당조사의 거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전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질문 또는 조정요구가 있거나 동조 동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거부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제3조 제1항 본문, 동조 제2항, 제4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5〉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1993.8.12)

1. 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명령’이라 함)의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실시와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금융실명거래 업무처리

가. 기본원칙(명령 제3조제1항)

- 1993. 8. 12 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에 의하여야만 가능

나. 기존 금융자산의 실명여부 확인(명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

- 1993. 8.12 현재 이미 개설되어있는 계좌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1993. 8. 12 후 최초의 거래가 있을 때 반드시 실명여부 확인 필요
 - 실명여부 확인은 『다.①』의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통장 등에 실명확인을 표시하여 교부

- 실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것으로서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인출)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명여부 확인 전에도 지급이 가능
 - 1993. 8. 12 이전에 발행된 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당좌계좌(가계당좌 포함)에서의 지급
 - 1993. 8. 12 이전에 자동이체(결제)계약된 각종 공과금·대출금의 원리금 등의 지급
 - 1993. 8. 12 이전에 발급된 현금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내의 지급
 - 1993. 8. 12 이전에 사용된 신용카드대금의 결제에 따른 결제계좌에서의 지급
 - 상장주식의 매수·매도 주문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 및 주식결제
- 확인 결과 성명이 동일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기재후 정정자가 확인·날인필요.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 기존 명의가 동일인의 실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

다. 실명거래 요령(『별표 1』 실명확인 방법』 참조)

- ① 계좌에 의한 거래의 경우(통장·거래카드 등에 의한 일반거래 형태)
 - 신규 계좌개설시에는 근거자료인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확인(전산입력)하고 통장등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 필요(필요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징구)

○양식예

본인성명 (대리인성명)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본인주민등록번호 (대리인 -)	()	실명확인자 (인)	

-실명계좌에 의해 계속거래시는 일반금융관행에 따라 거래하되,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고 청구서·신청서 등에 확인자가 날인

-타인의 계좌에 입금(송금포함)하는 경우에도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에 입금자의 실명을 기재·확인하고 적당한 여백에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날인

○다만, 입금자가 실명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공과금 등의 예입은 실명확인 생략가능

②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신청서·수표발행의뢰서·증서 및 수표의 이면 등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확인하고 적당한 여백에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날인(필요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징구)

* 통장·거래카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증서·어음·수표 등을 매매·상환·환급·발행 및 지급 등을 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말함

라.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

(1) 실명전환의무(명령 제5조)

-1993. 8. 12 현재 이미 개설된 계좌가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함(기존계좌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

-실명전환의무기간 : 1993. 8. 13 - 1993. 10. 12

○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인에 의해서도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6월(6월내에도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월)

(2) 실명전환의무기간내의 실명전환

① 실명전환의 절차

-거래자로부터 <별표 2>의 『실명전환신청서』를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거래원장 등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전산입력)

-실명전환 신청자에게는 <별표 2>의 『실명전환확인증』을 교부

② 실명전환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명령 제6조)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된 자산 중 다음 기준(계좌별)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을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함(④의 소득세 추징 별도)

○ 20세 미만 : 1천5백만원 이하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천만원 이하

○ 30세 이상 : 5천만원 이하

③ 고액실명전환 통보(대통령령 제4조 제1호)

-세무조사 특례기준을 초과한 실명전환자산에 대하여는 실명전환의무기간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전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함

④ 소득세 추징(명령 제8조)

- 기존에 실명자산으로 취급되어 차등과세되지 아니한 계좌를 실명 전환하는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주민세·교육세·방위세 포함)를 추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기존에 비실명으로 차등과세된 계좌는 추징 해당없음)

○ 추징대상 : 기존 실명계좌 중 상속·유증·주민등록상의 성명 변경·상호의 변경(양도세 제외) 등에 의한 일반 명의변경 이외의 모든 명의 전환

○ 추징세액 : <별표 3-가>의 요령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기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되, 추징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환일 현재 정상과세(세율 21.5%)되고 있는 경우 : 비실명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전환일 현재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과세(세율 5%)되고 있는 경우 : 정상세율(교육세 제외)을 적용하여 산출

※ 실명전환에 따라 소액사채 또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령시행후 1년간은 소액사채 또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추징방법을 적용함(명령 제 15조 제4항)

⑤ 다른 법률의 벌칙 등 적용제외(명령 제15조 제4항)

- 기존 비실명자산을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예: 대량주식취득 한도초과)하게 되어 벌칙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명령시행후 1년내에 동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칙 및 행정제재 적용제외(의결권 제한은 적용)

(3)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후의 실명전환

① 실명전환 절차 : (2)의 ①과 같음

② 소득세 추징(명령 제8조)

-실명자산으로 취급되어 차등과세되지 아니한 계좌를 실명전환하는 때는 <별표 3-나>의 요령에 따라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세액을 추징하되 추징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차등과세 강화(명령 제9조)

-1993. 10. 13 이후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의 차등세율을 적용

④ 과징금 징수(명령 제7조)

-실명전환의무기간만료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1993. 8. 12 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1993. 8. 12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의 10~6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금융자산 가액은 대통령령 제5조 및 재무부령 제5조 참조)

⑤ 전환내용 통보(대통령령 제4조 제2호)

-1993. 10. 13 이후 실명전환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전환내용을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마.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명령 제10조)

- 실명전환의무기간중 개인인 금융거래자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계좌별 합계액)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인출하는 경우 1993. 11. 12까지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 기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CD를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때 점포별 월합계 거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을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 다만, 3개월 이상 예탁하거나 기관투자가가 실물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금융권별 유의사항

가. 은행·체신관서·농·수·축협중앙회·상호신용금고 등

- 기존계좌의 실명재확인과 관련된 전산업무처리 철저
 - 전산원장에 실명확인 결과 신속입력, 현금카드 지급한도(100만원)의 관리
 - 전산원장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한 경우 가급적 고객이 원하는 점포에서 처리
- 자기앞수표 및 타인계좌입금시 실명확인에 유의
 -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의뢰시 의뢰자의 실명확인
 - 타인계좌 입금(현금·자기앞수표)시 입금자의 실명확인

나. 증권·투자·단자

- 기존 계좌의 실명 재확인

○ 전산원장에 실명확인 결과 신속입력 등 전산업무처리 철저

- 계좌없는 주식·채권 등의 실물거래시 실명확인에 유의

○ 거래 관련서류(계산서 등)에 확인·날인

○ 채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거래시 국세청 통보

다. 신탁·새마을금고·농·수·축협 상호금융

-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계좌의 실명 재확인 및 신규계좌의 실명확인 철저

라. 보험·공제(체신관서, 농·수·축협 등)

- 예정이자가 있거나 만기환급시 원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자·수익자의 실명확인

마. 시설대여회사·신용카드사·창업투자회사 등

- 채권발행, 투자수익증권 교부 및 배당금 등 지급시 실명확인

바. 명의개서대행·채권등록기관

-이자·배당 지급 및 채권등록시 실명 확인

3. 금융거래 비밀보장 업무처리

가. 금융정보의 제공금지(명령 제4조제1항 및 제4항)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경우 외에 금융거래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의한 제공요구
- 세무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요구 및 과세자료 제출
- 금융감독기관의 제공요구(금융기관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 금융기관 내부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정보의 제공요구

나. 부당한 정보제공요구 거부(명령 제4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12조)

-금융기관은 부당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

〈부당한 정보요구의 예〉

- 정보제공요구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제공 요구
- 정보제공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문서에 의하여 특정점포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문서는 거래자의 인적사항·사용목적·요구정보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정보요구의 범위가 정보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별표 1〉

〈실명확인방법〉

(대통령령 제3조 및 재무부령 제3조)

① 개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실명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공무원증(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에 의해 확인)
 - 주민등록 미발급자 :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학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학생증 등에 의해 확인
- 재외국민 : 여권에 의해 성명 및 여권번호를 확인하되, 여권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해 성명 및 등록번호를 확인

② 법인 :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법인은 납세번호증에 의해 법인명 및 납세번호를 확인

③ 임의 단체(동창회 등) :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하되, 세법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문서에 의한 단체명 및 고유번호를 확인

④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성명·단체명 및 등록번호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에 의해 확인하되, 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의해 성명 및 번호를 확인
- 외국단체 : 외국단체등록증에 의해 단체명 및 등록번호 확인

<별표 2>

앞

실명전환신청서

본인이 귀 기관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중인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전환대상계좌

종 류	계 좌 번 호	과 세 구 분 *
		비 과 세 과세(5%, 21.5%, 64.5%)

* 금융기관이 해당하는 것에 ○표시

2. 전환신청내용

	전 환 전	전 환 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 감		

신청인 성 명 (인)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실 명 전 환 확 인 증

귀하 예금명 : 계좌번호 :

귀하의 실명전환 요청에 따라 명의를 전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년 월 일

〈별표 3〉 소득세 원천징수

(실명전환기간별·소득발생기간별)

가. 실명전환의무기간내 실명전환

구 분	① 정상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② 비과세 또는 우대세율(5%)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대상금융 자산 예	○ 일반 예·적금·신탁 등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예탁금 및 일반세금우대저축 등
- 원천징수세율		
○ 이자·배당 발생기간	'88.12.31 이 전	'90.12.31 이 전
○ 세율	'89.1.1- '91.1.1 이후	'91.1.1 이후
· 소득세	28.5(30.5) 52(56) 64.5	11.75(12.75) 21.5
· 교육세	20 40 60	10 20
· 방위세	5 5 -	- -
· 주민세	2(4) 4(8) -	1(2) -
- 추정대상 기간	1.5 3 4.5	0.75 1.5
	(): 연간 이자·배당금액이 840만원 초과인 경우	(): 좌 동

나. 실명전환 의무기간경과후 실명전환

구 분	정상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우대세율(5%)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추정대상기간	- '93.10.12이전 발생 이자·배당은 『가. ①』에 의함 - '93.10.13이후 전환일까지 발생 이자·배당은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 적용	- '93.10.12이전 발생 이자·배당은 『가. ②』에 의함 - '93.10.13이후 전환일까지 발생 이자·배당은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 적용

〈부록 6〉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 細部基準 (1993. 8. 20)

1. 1993. 8. 12 이전에 자동이체 계약된 것으로 실명확인전 지급이 가능한 대상(지침 2-나)

—각종 공과금

- 국세, 지방세
- 전화요금(무선전화요금 포함)
- 전기요금
- 통합공과금
- 도시가스요금(시설상환금 포함)
- 전화부가서비스료(정보통신사용료, 전화사서함요금 등)
- 의료보험료

—대출금의 원리금 등

- 대출원리금
- 동일 금융기관내 정기성예금의 이자 또는 적금·부금의 납입금의 계좌이체(타인계좌에의 송금행위는 제외)

2. 실명확인시 오류정정의 범위(지침 2-나)

—성명이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오류정정 대상이 아님

-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고 동일인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성명에 표기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정정가능
(예) 이해영 (실명) → 이해영(표기)

3.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각종 공과금 납입(고지서, 지로)의 범위
(지침 2-다-①)

—국세, 지방세

- 벌과금
- 전화요금(무선전화요금 포함)
- 통합공과금
- 도시가스요금(시설상환금 포함)
- 전화부가서비스료(정보통신사용료, 전화사서함요금 등)
- 아파트관리비
- 초·중·고·대·대학원에의 등록금, 수업료
- 신문구독료
- 의료보험료, 자동차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대금(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에 한함)

4. 무통장 입금의뢰시의 실명 확인(지침 2-다-①)

- 제3자에 의한 무통장 입금 의뢰시의 업무 처리
 - 입금의뢰서에 본인(입금의뢰인)의 실명을 확인 표시(확인자 날인)

5. 자기앞수표 발행·지급시 실명확인(지침 2-다-②)

- 자기앞수표 발행시
 - 실명확인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발행의뢰서에 동 계좌번호를 표시하여 실명확인에 같음
 - 현금으로 발행 요구시 수표발행의뢰서에 실명확인 표시(확인자 날인)
 - ※ 발행시는 수표이면에 별도의 실명확인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님
- 자기앞수표 지급시
 - 실명확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수표이면에 동 계좌번호표시로 실명확인에 같음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실명을 확인하여 수표이면에 표시(확인자 날인)

- 무통장 입금시는 입금의뢰인 실명을 확인하여 수표이면에 표시
(확인자 날인)

6. 실명전환 절차 (지침 2-라-(2)-①)

- 금융기관이 권유한 차명예금 등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실명전환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을 추징하고 실예금주의 실명확인 등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신청내용대로 전환
- 실명전환은 계좌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계좌를 여러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전환할 수 없음

7. 실명전환 계좌의 소득세 추징 (2-라-(2)-④)

- 거래자가 기존에 실명으로 취급되어 차등과세되지 아니한 계좌를 실명전환하고 단시일내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상추징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출 허용
- 부족세액을 추가징수하는 경우, 실명전환일 기준 최근 이자지급 시까지 부족한 소득세 등을 추가징수하고, 그 이후 실명전환일까지 이자소득이 미확정인 부분은 전환일 이후 최초 이자지급시 또는 원금에 이자를 가산시 원천 징수함

8. 고액 현금 인출 통보(지침 2-마)

- 국세청 통보대상 금액은 1993. 8. 12~10. 12 기간중 당해 계좌의 순 인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임
 - 인출은 금융기관 외부로의 출금(인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의 대체출금도 포함
 - 다만,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가 정해진 것으로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는 금융상품(예: 정기예금, 적금 등)을 만기 후 동일금융기관내의 동일성격의 금융상품으로

재예치하고 중도해지하지 않는 경우 통보 제외

9. 기발행 채권·수익증권 및 CD의 실물거래시 국세청 통보 (지침 2-마)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예탁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예탁기관이 채권 등의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인(허)가 받은 기관일 것

(예) 채권의 경우 증권, 단자, 종금(단자, 종금은 적격증권)

수익증권의 경우 증권, 투신, 종금(기명식개발신탁수익증권의 경우 은행)

CD의 경우 증권, 단자, 종금

-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하고 있을 것
- 예탁대상 채권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예탁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예탁하고 당해 계좌를 통해 매매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

10. 실명확인 방법(지침 별표1)

—임의 단체의 실명확인

- 사업자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가 아님)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
- 다수의 대표자 명의거래를 회망하는 경우 명의인 복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거래가능

—비거주 외국인의 실명확인

- 증권감독원에서 발행하는 투자등록증에 의한 성명 및 고유번호로 신분증에 같음하여 실명확인 가능

—대리인에 의한 거래시의 실명확인

- 대리인이 가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서 실명확인

가능

-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필요시 사본정구)
-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납입하는 금융상품의 실명확인(예: 재형저축,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 신규계약 체결시 또는 일괄해약· 만기재계약시는 사업주가 제출한 종업원의 실명확인증표로 일괄확인
- 중도 해약 또는 만기 인출시는 당해 종업원별로 실명확인
-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이체하는 경우 사업주의 실명을 이체건별로 확인하지 않고 일괄 확인

〈부록 7〉 金融實名去來 業務指針 細部基準(Ⅱ) (1993. 8. 31)

1. 1993. 8. 12 이전에 자동이체계약된 것으로 실명확인전 지급이 가능한 대상인 공과금·대출금의 원리금 등에 다음이 포함됨(지침 2-나)
 - 보건의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금
 - 아파트 관리비(국민주택기금의 원리금 및 대한주택공사의 임대료·유자상환금 포함)
 -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되는 다음의 자동이체·결제 대금(1993. 10. 12까지만 허용)
 - 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대금
 - 근로자 증권저축 등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증권저축 납입금

2. 실명 확인전 지급이 가능한 대상에 다음이 포함됨 (지침 2-나)
 - 약관에 의하여 채권·수익증권·양도성정기예금증서·어음(이하 '운용증권'이라 함)을 투자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좌에서 당해 계좌를 통한 운용증권의 매수·매도 주문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 및 결제(운용증권의 원리금, 기타 과실의 재투자 포함)는 1993. 10. 12까지 실명확인 전에도 허용

3.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각종 공과금 납입(고지서, 지로)의 범위에 다음이 포함됨 (지침 2-다-①)
 - 아파트 관리비(병합 고지된 국민주택기금의 원리금 및 대한주택공사의 임대료·유자상환금 포함)

4. 법인명의의 실명전환시 유의 사항 (지침 2-라-(2)-④)

－개인명의의 금융자산을 법인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실명확인 방법

- 종전 무기명·가명으로 차등과세(현재 64.5%)된 계좌의 경우
- 실명전환 신청자(법인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법인(실명전환 명의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에 의하여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1993. 7. 1 이후 교부받았거나 기존에 교부받은 것으로 1993. 7월중 관할 세무서의 검열을 받은 것(생략대상 포함)에 한함
- 종전 실명으로 취급된 계좌의 경우
- 종전 명의인(개인) 및 전환 신청자(법인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법인(실명전환 명의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에 의하여 실명확인

※ 금융기관이 신청사실의 진위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인(개인) 확인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1993. 7. 1 이후 교부받았거나 기존에 교부받은 것으로 1993. 7월중 관할 세무서의 검열을 받은 것(생략대상 포함)에 한함

5. 임의단체의 실명확인(지침 별표 1)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단체명 및 동 번호로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음

- 고유번호의 체계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한바, 앞의 3자리수는 관할 세무서를 표시하고, 가운데 2자리수는 사업자 구분을 표시하며, 나머지 5자리수는 납세자 일련번호 및 검증번호로 구성되어 있음
- 임의단체(또는 법인)는 동 번호중 가운데 2자리수가 80~85 사

이의 숫자인 경우임

(예) 고유번호 : XXX - XX - XXXXXX
 관할세무서 사업자 일련번호 및
 코드 번호 구 분 검증 번호

6. 재외국민(해외 장기체류자 포함)의 실명확인(지침 별표 1)

- 재외국민(해외 장기체류자 포함)의 경우 기본실명 금융자산의 실명확인(실명전환은 제외)은 국내은행 외국지점에서 가능
- 재외국민(해외 장기체류자 포함)의 대리인을 통한 실명확인
 - 영사확인(본인의 실명을 확인)을 받은 위임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생략 가능함(영사확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7.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실명확인(지침 별표 1)

-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부랑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개인의 실지명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의료보호증에 기재된 성명 및 관리번호에 의해 실명확인 가능
-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비치하고 있는 신상명세서에 의거 계좌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부록 8〉 金融實名 關聯資料 通報業務에 關한 指針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기관은 일정금액 이상의 실명전환 내용과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 등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구 분	통 보 대 상	통보 주기	발 생 기 간	통 보 기 간
1. 실명전환 자산통보	① 전환의무기간내 전환시(계좌별) 20세미만 : 1,500만원 초과분 30세미만 : 3,000만원 초과분 30세이상 : 5,000만원 초과분	1회	8/13~10/12	10/13~11/12
	② 전환의무기간후 모든 전환자료 (계좌별)	매월	10/13~10/31 11/ 1~11/31 }	11/ 1~11/30 12/ 1~12/31 }
2. 고액현금 인출통보	전환의무기간내 순인출액이 3,000만원 초과시(계좌별)	1회	8/ 13~10/12	10/13~11/12
3. 고액채권 등 거래 내용통보	명령시행전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CD 등을 5,000만원 이상 거래시(점포별)	매월	8 /13~8 /31	9 / 1~9 /30
			9 / 1~9 /31	10/ 1~10/31

—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료통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특히, 자료 통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 관련자료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을 주로 하여 자료관리 기본원칙, 자료 통보절차, 자료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금융실명자료 통·수보 업무지침』을 마련, 1993. 8월분 채권 등 거래내용 통보분(1993. 9. 30 통보기한)부터 적용·시행토록 하였음

〈주요 지침 내용〉

- 각 금융기관별로 자료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보안교육을 의무화함.
- 자료의 전산화 및 집중 통보 체제를 도입하여 자료내용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함.
 - 관련자료는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전산입력하여 국세청(본청) 전산실에 일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 입력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전산체제 완료시까지 소정의 통보서식에 의하여 본점에서 국세청 본청 소득세과에 일괄 제출하여 전산실에 통보함.
 - ※ 현재는 일반과세자료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수집하여 지방청을 경유 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전산자료도 지방청을 경유 본청에 통보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업무편의를 위하여 통보자료 작성·편철방법 및 통보서식 기재요령을 마련함.
 - 일련번호 부여, 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하는 등
 - 오류자료 발생시 간편한 정정절차를 마련함.
 - 기재상의 착오 등 단순오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여 정정토록 함.

<금융실명자료 통·수보체제>

